

최종보고서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2018. 6.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제 출 문

경기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6.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소 성 규 (대진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이 승 현 (서정대학교 교수)
정 원 희 (건양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손 보 현 (경희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체계	2
II. 관련연구 고찰 및 해외사례 연구	4
1. 국내 관련연구 고찰	4
1)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6
2)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10
3) 의정부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14
4) 파주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17
2. 해외사례 연구	20
1) 독일 풀다 미군기지 (Fulda Military Community)	20
2) 일본 오키나와 사례	22
3) 필리핀 수빅만 & 클락 경제자유구역	31
4) 해외사례 시사점	37
III. 법제도 고찰	40
1.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40
2. 관련법과의 비교	42
3. 법적 시사점	42

IV. 관련계획 검토45

- 1. 정부 계획 검토 45**
 - 1)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45
 - 2)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51
- 2. 경기도 계획 검토 55**
- 3. 양주시 공여지역 현황 58**

V.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62

- 1.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 현황 분석 62**
 - 1) 양주시 현황 분석62
 - 2) 양주시 권역별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78
- 2. 양주시 반환(대상)공여지 분석 85**
 - 1) 모빌훈련장86
 - 2) 캠프광사리90
- 3.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제시 92**
 - 1) 반환(대상)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92
 - 2) 반환공여지 활용: “떠난 자와 남은 자” 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사업 ...94
- 4.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99**
 - 1) 통일 대비 공여지역 대응99
 - 2) 미군 반환공여구역법에 의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100
 - 3) 지역혁신특구 도입100
 - 4)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방식 활용101
 - 5) 미군반환공여지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회계 조성103
 - 6)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104

VI.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107
1. 법령개정방안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	107
1) 공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107
2) 공특별법상 발전종합계획의 법제도 개선방안	112
3) 공특별법의 구체적 개정방안	118
4) 제도 개선방안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134
2. 조례 제·개정 방안	137
1) 경기도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137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139
3.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142
1)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양주시 차원의 적용방안	142
2) 양주시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방안	143
참고문헌	145
[별첨 1]	146
[별첨 2]	147

표 목 차

<표 1>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
<표 2> 연구의 체계	3
<표 3> 국내 논문 고찰	4
<표 4> 국내 학술자료 고찰	5
<표 5> 오키나와 현의 반환공여구역 사업진행현황 및 이용현황(2015년)	28
<표 6>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정비이용현황(2015년)	28
<표 7> 수빅만 관리청 전략사업구조	32
<표 8> 반환공여지 개발 해외사례 검토	39
<표 9>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근거	41
<표 10> 반환 공여구역 지원 관련 특별법 비교	42
<표 11> 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46
<표 12> 변경계획(안) 예산	49
<표 13> 사업유형별 현황	49
<표 14> 추진 주체별 사업 현황	50
<표 15> 계속사업 변경내역	51
<표 16> 지원사업 선정기준(안)	53
<표 17>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별 가중치	54
<표 18>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변경 총괄표	56
<표 19> 반환공여구역 신규사업	56
<표 20> 반환공여구역 제외사업	56
<표 21>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57
<표 22> 관련부처·지자체 변경사업	58
<표 23> 민자사업 변경사업	58
<표 24> 경기도 공여구역 총괄 현황	59
<표 25> 경기 북부 공여구역 1	59
<표 26> 경기 북부 공여구역 2	60
<표 27>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60

<표 28> 양주시 2차 발전종합계획 총괄표	61
<표 29>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64
<표 30> 양주시 행정동별 인구 및 고령화율(2017년 5월 기준)	65
<표 31> 2014년 양주시 행정구역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67
<표 32> 사업체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 (2016년 기준)	68
<표 33> 양주시 도로망 현황(단위:m)	69
<표 34> 양주시 관내 주요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및 추이	70
<표 35>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71
<표 36> 양주시 일반종합시설 현황	72
<표 37>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73
<표 38>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74
<표 39> 양주시 청소년시설 현황	74
<표 40> 양주시 여성·아동복지시설 현황	75
<표 41> 양주시 지역보건기관 현황	76
<표 42> 양주시 주요 관광자원 현안	76
<표 43> 양주시 문화재 현황	77
<표 44> 양주시 유형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년 기준)	77
<표 45> 동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80
<표 46> 서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81
<표 47> 남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83
<표 48> 북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84
<표 49> 양주시 반환(대상)공여지 현황	86
<표 50> 모빌 훈련장 입지분석	87
<표 51> 표고분석	88
<표 52> 경사분석	88
<표 53> 개발가능지 분석	88
<표 54> 반환공여지 사업구조 제안	103
<표 55> 새만금개발청 설치·업무 주요내용	104
<표 56>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08
<표 57> 포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08

<표 58> 연천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09
<표 59> 동두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09
<표 60> 의정부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09
<표 61> 행정안전부 (구 행자부) 사업	112
<표 62> 관련부처 사업	113
<표 63> 관련부처 사업	113
<표 64> MDL 남쪽 25km 범위 이내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 사례	124
<표 6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127
<표 66> 공특법 개정 관련 주요 입법발의 현황	132
<표 6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140

그림 목 차

[그림 1] 의정부 New WAVE 구상	15
[그림 2] 오키나와현 내 미군기지 현황	25
[그림 3] 수빅만 부두시설 현황	32
[그림 4] 클락 자유무역항 면적	35
[그림 5] 클락 토지이용계획	36
[그림 6]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52
[그림 7] 양주시 인접도시	63
[그림 8] 양주시 생활권	63
[그림 9] 양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증감률 (2008년 대비)	65
[그림 10] 2014년 양주시 산업별 종사자수 및 산업특화도	67
[그림 11] 양주시 택지	71
[그림 12] 양주시 용도지역 현황	71
[그림 13] 양주시유형별공공체육시설(좌) 및 면적별공공체육시설(우)	78
[그림 14] 양주시 종합발전계획	79
[그림 15] 동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80
[그림 16] 서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82
[그림 17] 남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83
[그림 18] 북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85
[그림 19] 모빌훈련장 위치도	86
[그림 20] 모빌훈련장 광역현황 종합분석도	87
[그림 21] 모빌훈련장 현황전경	87
[그림 22] 모빌훈련장 표고분석도	88
[그림 23] 모빌훈련장 경사분석도	88
[그림 24] 모빌훈련장 개발가용지 분석도 (표고+경사)	89
[그림 25] 캠프 광사리 전경사진	90
[그림 26] 위치도	91
[그림 27]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1번지 일원(효촌저수지 인근)	97

[그림 28]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34-4번지 일원	97
[그림 29] 효촌저수지	98
[그림 30] 맹골 정보화마을	98
[그림 31] 백인걸선생묘	98
[그림 32] 백수현 전통가옥	98
[그림 33] 사업 위치도	98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사회·복지·문화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을 경우, 의도와는 달리 효율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
- 또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시·군이 스스로 반환공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여구역만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존재
- ▶ 양주시의 기존 공여구역은 반환 및 반환예정지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양주시 1읍·4면·6동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과 2 참조)

〈표 1〉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양주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과 2

- ▶ 따라서 본 연구는 양주시 광적면 소재 모빌 훈련장의 활용방안과 그 주변지역의 활

성화 방안을 통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아울러 부차적으로 계속하여 공여되고 있는 캠프 광사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존 관련 계획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과 함께 합목적성 및 연관성, 법규상 문제점, 계획수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체계

▶ 연구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반환공여지인 광적면 소재 모빌 훈련장과 그 주변지역 및 부차적으로 계속공여지 캠프 광사리를 대상으로 함
- 연구방법은 계획검토, 현황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진행
 - 계획검토는 기존계획에 대한 합목적성 검토
 - 현황분석은 양주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현황 확인
 - 사례연구는 다른 자치단체(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그 주변지역 활성화 사례 검토
 - 전문가 자문은 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도출(양주시 공무원 및 양주시 시의원, 양주시 시민단체 대표, 대학, 연구원 등에서 그동안 미군공여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연구 체계

-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체계에 대한 기본적 논의
- 제2장 관련연구 고찰 및 해외 사례연구
 - 국내 관련연구 고찰
 -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사례별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행정기관이 있는 외국사례(독일, 필리핀, 일본 사례) 비교 검토
- 제3장 법제도 고찰

-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국가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제4장 관련계획 검토
 - 양주시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조사·분석하고, 양주시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의 사업계획,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분석
 -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
- 제5장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 양주 지역의 특성 분석을 통해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과 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두 지역 간의 연계발전 방안 도출
 - 양주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도 모색
- 제6장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별 기본구상을 통해 공여지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 활성화 방안을 제안

〈표 2〉 연구의 체계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체계	
↓		
제2장 관련연구 고찰 및 해외 사례연구		
○ 국내 관련연구 고찰	○ 해외 사례 연구	○ 시사점 도출
↓		
제3장 법제도 고찰		
○ 법규상 문제점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제4장 관련계획 검토		
○ 정부 계획 검토	○ 경기도 계획 검토	○ 양주시 대상지 현황검토
↓		
제5장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 양주시 반환공여지 분석	○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제시	
○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제시		
↓		
제6장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검토	○ 법제도적 방안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 제시	

II. 관련연구 고찰 및 해외사례 연구

1. 국내 관련연구 고찰

- ▶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는 7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7개 논문에서 논의하거나 검토된 제약요인(문제점 포함) 중 반복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7개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약요인(문제점 포함)은 재원조달(공유지 매입 포함)이며, 6건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 그 이유는 반환 공여구역의 현안사항(공여지 매입과 기반시설 확보, 환경오염 처리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개발 재원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그 외 환경오염은 4건, 주민참여 3건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음

〈표 3〉 국내 논문 고찰

저자	논문	문제점
정원모(200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공여지 매입 재원, 개발사업 재원 조달, 환경오염
안희숙(2008)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도시공간구조의 기형적 형성, 공유지 매입 재원
유병규(2008)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연구 :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 제약, 사유재산권 주장, 환경오염 치유·방법, 주변지역 보상가 인상, 공여지 주변지역 부동산투기, 공여지 매입예산 부족, 한국군의 재활용 현안, 토지 원 소유자 환원 및 보상 현안
김경수(2010)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 부재, 환경오염, 부동산투기, 재원조달문제
모남중(2011)	주한미군반환기지 이전 적지개발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행정편의주의, 재원조달측면
윤종훈(2011)	주한미군반환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계획 분석과 개선방안	공법적 규제, 도시기본계획과 활용방안 불일치, 도시기본계획 의제의 한계, 환경오염원 과다 발생, 재원조달 부족
홍석우(2012)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재원조달, 기지이전 지연, 주민참여, 환경오염
최보경(2017)	미군기지 유희공간의 문화재생 사례 연구	문화재생과 관련된 연구
강훈(2018)	지역유형화에 기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방안 연구	지역의 유형화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 ▶ 학술자료는 미군기지와 공여구역(또는 공여지)를 키워드로 구글 및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주요내용은 관계법, 관련계획, 환경오염,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 학술자료에는 각 주제별로 제약요인(문제점 포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여구역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연구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학위논문자료와 차이가 있었음
 - 그 이유는 정부의 재원지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안을 중요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학술자료의 발표기관 중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도내 반환공여구역이 가장 많아, 지역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표 4〉 국내 학술자료 고찰

저자	제목	주요내용
김영일 외(200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지원방안
홍기남(2007)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령』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관계법
김현수(2007)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 동두천 공여지 활용방안	발전계획
이상규(2007)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 미군공여지 활용 및 관리방향	발전계획
허대영(2007)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 반환공여지(Camp Hialeah) 활용 및 주변개발 방향	발전계획
소성규(2007)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정의의와 법정정책학적 과제	관계법
이필재(2007)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환경오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	발전계획
김유(2008)	일그러진 반환의 골레 미군기지	환경오염
최용환 외(2008)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 지원 방안 연구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2008)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전계획
최용환 외(2010)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원 대책 개선방안	지원방안
전대욱(2010)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활용정책	발전계획
이용환(2011)	미군 주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가지원 개선방안	지원방안
김윤승 외(2013)	지역오염부지 재이용 비전과 전략	환경오염
지방행정연구원(201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전계획
경기연구원(2016)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발전계획
이시화 외(2016)	평택시와 주한미군기지 상생방안에 관한 연구	상생방안
장정민 외(2017)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	지역개발

1)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¹⁾

(1)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의 기본 원칙

- ▶ 주한미군 거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의 변화
 - 주한미군기지가 양호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한 미군의 존재 여부를 기정사실화 하고, 분쟁을 발견 및 해결하여, 주한 미군과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함
 - 주한미군과의 갈등 해소와 주한미군과의 통합은 주한미군의 기존 소극적 또는 부정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보다 적극적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 미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융합된 창조도시 환경 조성
 - 주변지역의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분위기에 서 미국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음
 -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혼합된 공간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축
 - 평택 미군기지는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이 큰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국제도시에 적합한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음
 -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국제적인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음

1) 장정민 외(2017),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 자료 요약.

(2) 공공질서 유지 및 생활안전 환경구축 사업

▶ 안전마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내 현재 안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안전조사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지역별 기초조사가 실행되어야 함
- 안전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역 내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지역주민, 경찰, 주한미군 및 가족, 지역방범대원 등이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해 상부상조하여 주한미군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함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구축 체계

- 주민들의 적극적이면서 폭 넓은 참여가 범죄예방은 물론 주한미군 주변지역과 공공질서 및 생활안전이 부족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한국인 선주민과 주한미군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면 지역의 시설, 자원, 제도적 장치들이 다양한 문화의 지역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조응할 뿐 아니라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지역 완결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공공질서 및 치안 유지 환경 조성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심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 보완 등 안전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3) 원주민과 주한미군 갈등해소 사업

▶ 현안 갈등 민원 해결 및 갈등예방

- 주한미군 주변지역은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밀집지역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코디네이터 및 갈등조정담당관제도를 운용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음

▶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확대

- 타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지역주민으로써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주민간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가 필요함
- 이해를 시키기 위한 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지역 주민만이 아닌 주한미군 및 가족들에게도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과 한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 경기도-평택시-지역주민 협치 강화

- 개방적인 참여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따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경기도-평택시-지역주민의 협치강화라고 하였지만, 주한미군 또한 같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간 교류협력 사업

▶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함
-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Liberty Campaign을 실시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함
-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에 주한미군을 참여시키고,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문화 프로그램 개발

-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주한미군과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함
- 영어학교, 한국어 교실, 미군기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 이후 설문조사결과 한국인과 외국인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소통인프라 개발

- 시민들에게 외국인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함
-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질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어 표지판이나 안내문 제작을 통해 외국인이 주변지역을 탐방함에 있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도시계획측면 시설 보완 사업

▶ 주변지역 인프라 구축 확대

- 미군기지 주변에는 안정 로데오거리나 신장쇼핑몰 거리 등이 있음. 두 지역 모두 용산기지의 이전으로 미군기지의 확장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음
- 그에 대한 활성화 전략으로는 특화거리조성, 랜드 마크 건설 등을 통한 상권과 조화된 가로공간을 조성하며, 지장물 최소화를 통한 보행자 우선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약 10만 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때 호텔 및 숙박시설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국제공항의 발달과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인해 전시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컨벤션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최자체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임
- 한옥을 활용한 한옥 전통문화체험관 등을 건설하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함

▶ 주변지역 교통 시스템 보완

- 경기도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열악하여 승용차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경우 평택시 평균은 33.7대/만인인 반면 미군기지 주변은 45.1대/만인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결과 80%이상의 답변이 대중교통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바라고 있었으며 트램이나 지제역을 활용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한 교통시스템 개선을 하고자 함

2)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²⁾

▶ 중복규제 해소와 민자유치사업 내실화

- 반환공여지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 낙후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로 민

2) 소성규 외(2015), 반환받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자료 요약.

자유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민자유치사업의 내실화
 -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 계획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의 내실화가 필요
- 현재 특별법 상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도 공공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인허가의제(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법 제35조),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
 -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인허가의제,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제 때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자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투자선도지구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
 -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계획의 중요한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서 활용하는 산업개발, 문화관광개발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투자선도지구와 유사한 인센티브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 사업의 다양화 방안으로 국비지원 증대
 -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이 지역의 개발 수요와 잠재력을 고민하고 실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종합계획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사업 확대와 특별법에 중앙의 재정지원에 대한 확대도 포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부지 매입비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경우는 하천, 도로, 공원 등 3개로 한정되어 있음
 - (1) 산업단지 조성이나 창업보육센터, 관광단지 등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지원, (2)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의 확대
 - 사회적 가치의 확대에 따라 최근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등의 사업 시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광역방재기지 조성으로 인한 국비 유치

- 동두천시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공여지의 개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방치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타치카와 방재기지를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광역방재기지 설치를 제안하고 국비지원을 요청
- 다만 소방항공센터는 ‘비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주한미군부대와 협의 시행

▶ 지역경제 공동화의 회복

-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수 있는 사업 유형 구축

- 사업 목표는 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도심재활성화, 교육복지활성화, 문화관광활성화, 역량강화, 환경개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주민역량강화 사업

-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다양한 주민자치조직 등의 컨설팅,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실제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선정으로 최대 50억원의 국비지원 가능
-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으로 경기도에 배당되는 발전기금의 우선배분 촉구

▶ 기타 제도개선방안

- 특별법상의 지원도시사업

-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지원함
- 동 규정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완화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동두천시에는 소요산역, 동두천역,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등 5개 역사가 소재함
 - 이들 역사 주변지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게 됨
 - 주요 시설과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개발 가능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이 있는 경우 31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
 - 이와 같은 의제처리 규정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해야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올 수 있어, 공무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로 완결시킴으로서 사업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법상 손실보상 항목 추가
 - 지원특별법 입법목적에 손실보상 항목 명시하여 중앙정부 지원 확대 및 지역주민 보상근거 마련함

▶ 동두천시 추진사업 지원방안

- K-Pop 테마거리 조성사업·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
 - 동두천시의 유일한 산업기반은 가죽피혁산업으로서, 이를 중점 육성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하나의 정체성과 중심성이 있는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경우, 북부지역의 섬유패션산업 및 가구산업의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화 된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임
 - 가죽피혁산업을 특화시켜 산업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
 - 동두천의 가죽피혁테마단지조성을 국가차원에서 주도하여 (가칭) ‘가죽피혁산업특화지구’를 조성해 관련 R&D활성화 및 산-학-연 연계, 산업관광을 위한 테마 발굴,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위한 국제적인 시장 발굴 및 MOU체결 등의 추진이 필요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국토부(LH공사)가 타당성 검토, 입주 수요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경기도 시공

- 사 등이 참여해서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산업단지 내 에너지 신산업밸리 및 R&D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3) 의정부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³⁾

(1) 의정부 New WAVE 구상

- ▶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서 1도심과 2부도심, 그리고 2지역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 형성과 생활권역을 개편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개통, 의정부 중심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전 및 관리 방향의 설정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한 시점임
- 공간구조는 인구, 사회,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의정부시가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정부의 1도심-2부심-2지역중심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구조로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 의정부시의 새로운 물결을 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New WAVE 구상을 제안
 -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물결로 활용하여 의정부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의정부의 가치를 향상하고, 행복하고 활력있는 의정부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 4대 전략은 Welfare(복지, 후생), Amenity(쾌적성), Value(가치), Environment(환경)

3) 소성규 외(2017),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자료 요약.



[그림 1] 의정부 New WAVE 구상

자료 : 소성규 외(2017),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회.

(2)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 지역별 발전방향

- ▶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중심에 위치한 캠프라과디아·홀링워터, 의정부 북부에 위치한 캠프에세이온·카일·시어즈,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캠프잭슨과 주변지역으로 크게 5개의 공간권역이 설정될 수 있음. 5대 공간 권역을 NEW WAVE의 4대 전략에 따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Welfare(복지, 후생) : 캠프에세이온·카일·시어즈 주변지역
- Amenity(쾌적성) : 캠프 스탠리
- Value(가치) : 캠프라과디아·홀링워터, 캠프 잭슨 주변지역
- Environment(환경) : 캠프레드클라우드 주변지역

▶ Welfare

- 캠프에세이온·카일·시어즈 주변지역은 반환공여지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을지대학교와 대학병원, 광역행정타운으로서 다양한 공공기관, 체험테마파크 및 복합문화센터가 입지한 지역임. 현재 주변지역은 상업 및 업무시설의 밀도가 낮은 편이며, 저층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저밀도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향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의 주변지역은 그 위상이 변화하여 경기북부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변모가 가능한 지역임
- 따라서 혁신공간창출형의 도시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복합지식산업, 캠퍼스타운, 생산하는 도시아파트단지 사업 등을 제안

▶ Amenity

- 캠프 스탠리 반환공여지는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이 주변지역은 도시공간에서 위상이 변모한 지역으로 캠프스탠리 부지 자체와 더불어 그 주변지역인 빼벌마을, 교도소 이전,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고려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
- 특히 빼벌마을의 경우에는 저층의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제안

▶ Value

- 캠프라과디아·홀링워터 주변지역은 의정부의 중심지로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또한 이 지역은 주거시설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아파트와 업무시설이 밀집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역세권의 정비 및 주거지 정비 사업을 통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캠프 잭슨 반환공여지는 서울에서 의정부로 통과하는 관문지로서 국제아트센터 등의 예술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주변지역은 상업, 업무시설 밀도가 매우 낮으며, 빌라와 저층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으로 저밀도의 주거지역임. 향후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더불어 저층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 등의 형성을 통해 중밀도의 주거지역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Environment

- 캠프레드클라우드 반환공여지내에는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주변지역은 상업·업무시설의 밀도가 매우

낮은 저층의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 흥선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의정부종합운동장-안보테마관광단지-경민대학교를 연결하여 도시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

4) 파주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4)

▶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특성

- 경기도 내의 반환공여지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 및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특히 반환공여지가 다수 위치한 동두천, 의정부시와 파주시의 경우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발방안도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임.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함. 또한 의정부시는 도시내 미군공여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 이미 개발되어진 도시의 보완점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파주시는 대부분 시 외곽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파주시는 기존 도시기능과의 연계하여 도시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설계해야 함

▶ 도입 시설 연구 용역 결과 내용

- 파주시는 전체 공여지중 민통선 이북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6개 기지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검토
- 주민 의견
 - 공여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군기지 반환 이후 미군 공여지 활용용도에 있어서는 공공용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상회복, 주거용도, 공장용도, 상업용도 순으로 나타났음
 -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게리오웬은 문산읍 선유리 인근에 위치한 공여지로 공동단위로 설정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4) 국토연구원(2004),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주민 의식 조사·분석 요약.

- 전문가 의견

- 도시, 건축, 환경 등 각계 전문가 그룹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하여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파주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도출한 후 기지별 적용 가능성을 토론했으며 아이템을 도출
- 1차 도출결과(공통) : 생태단지 및 시범마을 조성, 복합공원도시(도시+공원), 신도시형 택지 개발, 패션 기능형 섬유산업, 체육전문 트레이닝센터(골프 아카데미 등), 교육시설(대학 유치), 종합복지타운(행복촌), 임대형 첨단 산업단지, 테마파크
- 2차 도출결과(기지별) : ① 캠프 하우스 : 문화건축 Park City, ② 캠프 에드워드 : 교육의료 복지 - 이화여대 유치, ③ 캠프 스탠튼 : 공과대학 입지, ④ 캠프 자이언트 : IT 아울렛(숙박, 미팅, 유통, 휴양공간), ⑤ 캠프 게리오웬 : 캠프 자이언트 연계 및 생태시범단지, ⑥ 캠프 그리브스 : Peace Park 통일 대비 유보지

- ▶ 캠프 하우스 개발 계획(안)

- 교육·문화 Park(안)

-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의 제공
- 교육 및 역사, 문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 공릉 문화재 및 관광지와 연계된 역사 문화의 장
- 헤이리 아트 밸리와 연계한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 문화(체육)공원 개발(안)

- 파주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시민공원의 조성
- 문화를 테마로 한 각종 미술, 음악 등 행사 개최

- ▶ 캠프 에드워드 개발 계획(안)

- 교육연구복합단지 개요

- 명문대학 유치로 교육도시 위상확립 및 대학중심의 활기찬 문화 창출
- 파주의 부족한 의료시설의 확충
- 우수인재 활용을 통한 첨단산업 연구지원

- ▶ 캠프 스탠튼 개발 계획(안)

- 교육연구복합단지

- 광탄시가지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을 유치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 연계체계의 구축
- 택지 개발 계획(안)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광탄 시가지의 활력을 도모
 - 하천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의 수립
- ▶ 캠프 자이언트 개발 계획(안)
 - 교육연구복합단지
 - 문산중심생활권에 수도권 이전 대학의 유치로 교육중심지의 위상 부각
 - 급증하는 파주시 인구의 교육 수요 충족 및 인재육성으로 산·학 연계 도모
- ▶ 캠프 게리오웬 개발 계획(안)
 - 디자인 특화단지 (패션, IT)
 - 첨단패션 디자인 및 IT제품 전시장 상설운영/디자이너 창작활동 공간 제공
 - 국제적인 비즈니스 장소의 제공으로 해외 판로 개척 도모
 - 쇼핑, 관광,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패션-문화-관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교육연구 복합단지
 - 대학유치로 교육중심지 이미지부각
 - 인접 선유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연계단지 구축
- ▶ 캠프 그리브스 개발 계획(안)
 - 국제교류협력단지 (Peace Park)
 - 남북교류 화합의 장소 마련
 - 임진강 수변관광지와 연계 관광네트워크 구축

2. 해외사례 연구

1) 독일 풀다 미군기지 (Fulda Military Community)⁵⁾

▶ 일반사항

- 위치 : 독일 중동부 헤세(Hesse)주 동쪽 도심부에 위치
- 시설 : 군인 막사 및 숙소, 비행장, 보급창고, 무기창고, 학교, 소매점, 병원 등
- 주체 : 독일 연방정부(German Federal Government)

▶ 반환연혁 및 추진절차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풀다 지역의 군사기능을 미군이 인수하면서 주둔하기 시작
- 냉전기인 구소련과의 긴장관계 속에 풀다 미군기지의 중요성이 증가와 더불어 기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됨
 - 그 중요성에 의해 풀다 기지는 미군 사령부가 되고 동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1990년 10월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미군 기지의 중요성이 독일에서 사라짐. 통일 2년 풀다 미군의 주요임무는 주변지역 경계로 축소됨
- 1991년 초 미국은 풀다지역 미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1993년 여름 미국 유럽 연합사령부 풀다 미군 기지를 독일에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1994년 여름 완전 철수함
- 다운 기지(Downs Barracks)와 시켈스 비행장(Sickels Airfields)이 풀다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두 기지의 개발이 풀다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두 기지는 풀다 기지의 99%의 미군과 73%의 면적을 차지했으며, 해당 지역 70% 이상이 미군기지 폐쇄로 직업을 잃음
- 시는 독일 건축법(German Construction Code)을 이용하여 다운 기지를 긴급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이 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이러한 결과로 지역 주민에게 모든 개발구역의 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5) Restructuring the US Military Bases in German Scope, Impacts, and Opportunities, BICC(1995) 자료를 재구성

제공

- 시는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기지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기존 미군기지 시설을 적극 활용한 다운 기지 개발

▶ 개발절차

- 독일 연방정부는 풀다 미군기지 개발기간 동안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Bundesvermögensamt(독일 연방정부 자산관리 기관)은 민간·공공 투자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개발 부지를 여러 개로 나눔
- 독일 연방정부 자산관리 기관은 상태가 양호한 다양한 군부대 시설들을 민간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

▶ 개발방향

- 다운 기지는 미군 문화의 중심이자 사령부로 인해 다양한 군사시설을 보유
 - 군가족 숙소, 대규모 퍼레이드 광장, 행정시설, 군인 기숙사, 주차장, 학교, 은행, 주유소, 장교 클럽,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볼링장, 병원, 운동장, 사격 훈련장 등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됨
 - 몇몇 시설들은 반환 당시 상태가 매우 양호 했으며, 내부 철로가 독일 국가 철도망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양호
- 기지 내 시설들이 가진 다양한 이점들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였고 빠르게 시설들이 재생됨
 - HLT의 분석에 따르면 다운 기지는 풀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잘 관리된 시설들과 주거와 상업시설의 적절한 균형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끔
 - 헤세 주정부는 지역 경찰청 본부, 개발부, 농림부와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다운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함
 - 민간투자자 및 소규모 기업들에 의해 장교클럽은 디스텍으로, 성당은 청교도 교회로, 연료탱크는 석유무역회사가 사용하고, 탱크 차량정비소는 건설 중장비 창고로 전환됨
 - 독일 적십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미군 기숙사 한동을 연습시설로 사용하기를 희망
 - 독일 연방정부 자산관리 기관은 군인 가족숙소 290동을 민간투자자들에게 매각했으며 리노베이션 후 주택으로 재생됨

- 대부분의 시설들이 새롭게 재활용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만난 반면에 레크레이션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저조함
- 독일 연방정부 자산관리 기관은 도로 및 도시 인프라 확장을 계획하여 기지와 시설들의 투자가치를 제고함. 여러 개의 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 신속히 재생된 시설들로 인해 독일 정부는 조성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시는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고 미군 철수로 인해 직업을 잃은 250-300명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음

▶ 독일 풀다 미군기지 성공요인

- 캠프 케이시, 호비와 같이 대규모 복합 미군기지 사례로 적합함. 장교클럽, 학교, 병원, 가족숙소 등 부지와 함께 종합적인 시설이 반환됨
- 기존 다양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환 시기를 앞당기고 역사성을 높임
- 긴급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등 전문기관에의 민첩한 조치가 신속한 재투자를 이끌
- 도로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부대 및 시설의 가치 제고

2) 일본 오키나와 사례

▶ 일반사항

- 공식명칭 : 沖縄(고자)(Okinawa)
- 위치 : 일본의 남서단에 위치, 오키나와현(縣)
- 면적 : 49km² (일본 국토면적의 약 0.6%를 차지), 50개의 유인도로 구성
- 인구 : 약 140만명
- 특징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기지의 항구화에 따라 크게 발전
 -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기후에 속함
 - 지역의 37%가 군용지이며 점차 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

- 좋은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오키나와 반환협정

-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발효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그 군사적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 (2) 일부 축소되어 지는 부분은 자위대에 의해 보충되고, 일본본토에 관해서 안보조약을 바탕으로 미일(美日)상호방위체제를 강화할 것
 - (3) 오키나와에 대하여 미국의 시정권은 일본에 반환되어질 것
 - (4) 위 사항들에 대한 재편성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고, 이후의 오키나와를 둘러싼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또한 일본에서 지불할 것
- 국제정세의 변동과 오키나와 기지
 - 과거 미소 냉전종결에 의해 미일(美日)안보보장체제를 기축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크게 변경되어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함
 - 1995년 2월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안보보장전략」에서 미군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군전방전개부대는 10만인체제로 유지하고, 미국의 경제적 건전성과 세계 안보보장에 있어서의 중요인식을 나타내면서, 한반도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미군의 중심적인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격동하는 오키나와기지 문제
 - 오키나와현에 대한 미군기지의 반환은 2003년 까지 약 16%가 반환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음
 - 미군기지에 의해 오키나와는 진흥개발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훈련피해, 미군에 의한 치안사건, 오염물질 유출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의 대책의 배경 및 개요

-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전(戰) 종결 후 미군이 농지, 택지 등의 토지 대부분을 접수
- 현재까지 미군공여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오키나와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활용방안, 보상문제, 이용촉진, 국가 책임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함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1978년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공여구역 반환에 수반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이하 「반환특조법」>의 조기입법화를 추진
 - 그 결과 「나라의 부담 또는 보조비율의 특례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끝에 1994년 6월 반환특조법이 시행됨
- 이후 반환공여구역 대책준비 협의회 발족(2000),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 제정 및 오키나와 진흥계획 결정(2002), 반환공여구역 대책 협의회 발족(2002), 반환특별법의 개정(2002), 관련 시읍면과의 지속적 협의(2003), “캠프 구와에 북쪽지구”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2004), “후텐마 비행장 공여구역”에 대한 활용방안 제2회 심의조사회 개최(2005) 등의 대책이 진행

▶ 오키나와현청의 미군대책과

- 1972년부터 「미군기지대책과」 존재
- 미군기지의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는 “과” 로써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담당팀 정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이용대책과」의 경우 2002년 관련 법률의 기반이 만들어진 이후로 업무 시작

▶ 오키나와 내 미군공여구역 현황

- 오키나와의 면적 중 약 10.4%가 미군공여구역이며, 이 면적은 일본 내 미군공여구역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2006년)
 - 미군공여구역 33개소
 - 미군공여구역 면적 23,176.1ha (오키나와 면적의 약 10.2%)
 - 미군전용시설면적 : 22,807.2ha (일본 미군공여구역의 약 73.8%)
 - 군관계자 총 47,300명



[그림 2] 오키나와현 내 미군기지 현황

자료 : 경기연구원, 2015.

- 비록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되었지만, 반환된 경우도 불과 30일 전에 반환통지를 하거나, 반환부지가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이격되어 있어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대책에 있어서의 과제

-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사업 이전에 토지원소유자나 관기 지자체의 의향이 배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반환 및 개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됨

- (1) 반환구역 및 반환시기 명시지연
 - (2) 각종 조사의 지연에 의한 활용계획의 지연
 - (3) 활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원소유자 및 관계자들과의 합의점 형성지연
 - (4)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지연
 - (5) 사업 중 문화재 발굴조사 및 불발탄 처리 등에 의한 공사 지연
- 또한,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반환된 토지 중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의 토지가 존재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
 - 그 밖에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환이 완료되기 전에 공여구역 내를 미리 조사하여 기반시설정비나 문화재 조사, 환경조사 등을 마쳐야 하지만 기지 내 조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기지내 환경문제

- 반환기지 내 환경문제의 경우 향후 반환될 기지에 대해서 반환특조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오염물질 및 불발탄 조사 및 제거를 행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기 반환된 토지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에 대응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
 - 기 반환된 구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원인자 규명을 할 것
 - 조사 후 원인자가 미군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설 경우, 원인자인 미국이 해당 유해물질의 처리 및 복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것

▶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주류군(미군기지) 용지의 반환에 수반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목적 : 주일미군기지용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반환용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오키나와의 균형있는 발전 및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향상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제3조 : 법의 정의 및 국가와 오키나와현 및 관계 시읍면의 협력

- 제4조 : 반환용지의 원소유자와의 협력
- 제6조 : 반환실시계획
- 제7조, 제8조 :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조치
- 제9조 : 조사 및 측량
- 제10조, 제11조 : 시읍면 및 현 종합 정비 계획
- 제12조 : 종합정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13조 :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려
- 제14조 : 반환용지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 제15조 : 국유재산의 활용

▶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

- 목적 : 오키나와의 특수한 사정을 비추어 보고 오키나와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 편, 오키나와의 종합발전계획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오키나와의 자립적 발전 및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 내용
 - 반환용지의 이용의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
 - 반환용지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정의
 - 대규모 용지의 지정
 - 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특정 용지의 지정
 - 시·읍·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급부금 지급

▶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활용현황

- 1963년 1월 ~ 2015년 3월까지 반환된 공여구역은 12,628.6 ha임
- 그 중 공공사업에 의한 정비는 4,886.4ha로서 39 %를 차지함
- 개인기업에 의한 이용이 3,918.5ha(31%) 이며, 보전지역이 4,011ha(3%), 공공의 이용이 2,621.8ha(21 %), 자위대의 이용이 488.8ha(4%) 등임
- 반환된 토지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량 사업등의 공공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주거지나 상업지역의 확보, 공공시설의 정비, 농업 또는 공업용지로 이용되어 해당 지역의 진흥에 큰 역할을 함

〈표 5〉 오키나와 현의 반환공여구역 사업진행현황 및 이용현황(2015년)

반환면적 (ha)	공공사업의 실시현황							
	완료		실시중		계획중		합계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12,682.6	4,438.6	36	267.4	2	135.4	1	4,886.4	39

자료 : 경기연구원, 2015.

〈표 6〉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정비이용현황(2015년)

공공의 이용		개인, 기업의 이용				자위대의 이용		미군 재공여 (재사용)		보전지		개발불능지역	
		공공사업 실시		공공사업 미실시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2,621.8	21	2,008.9	16	1,909.6	15	488.8	4	320	3	4,011	31	1,287.2	10

자료 : 경기연구원, 2015.

▶ 공공사업에 의한 정비

- 공공사업에 의해 정비되고 있는 유적지는 4,886.4ha 로써, 반환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4,433.6ha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67.4ha가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135.4ha가 사업계획중 임

▶ 공공의 이용

- 반환공여면적의 약 21% 인 2,621.8ha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사, 공익 단체 등에 의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개인, 기업의 이용

- 개인·기업이 반환공여면적의 31%인 3,918.5ha를 이용하고 있음
- 이 중 사업이 실시된 것이 2,008.9ha로 16%를 차지하고 있음

▶ 자위대의 이용 및 미군 재공여

- 반환공여구역의 4%인 488.8ha를 자위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3%인 320ha가 반환 후 다시 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 중임

▶ 보전지 및 개발불능지

- 보전지로 남겨진 토지는 약 31%인 4,011.0ha이며, 그 외 개발이 불가능하고, 아직 활용이 미정된 토지는 1,278.2ha이며 10%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불능지의 경우 급경사지이거나 무인도, 소규모용지 등임

▶ ① 북부훈련장(아즈마손, 쿠니가미 촌)

- 반환면적 : 9,897천㎡ / 미반환면적 : 78,332천㎡ / 반환율 : 약 11.2%
 - 오키나와현 최대의 훈련장으로 미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등이 훈련
 -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현재 일부는 농지나 리조트, 호텔용지로 되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은 보전지로 계획됨

▶ ② 캠프 즈케란(구 이시카와 시, 오키나와시, 기타나카구스쿠 촌, 기노완시, 이토만시)

- 반환면적 : 1,283천㎡ / 미반환면적 : 6,425천㎡ / 반환율 : 약 17%
 - 미군비행장으로 사용, 반환 후 지주 조합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 현재 주차장을 활용한 대규모 교외형 점포들이 존재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음

▶ ③ 캠프 머시(Mercy)

- 반환면적 : 410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미육군 의료사무부대의 관리 하에 수의센터나 본부용지로 사용
 - 환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현재 주거지역으로 이용

▶ ④ 나하 공군·해군 보조시설

- 반환면적 : 3,787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나하 비행장의 보조 시설용지로 사용(주로 장교, 하사관 및 군속용의 주택지역에서 유치원, 유원지, 골프장, PX, 은행 등이 배치)
 - 반환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나하의 주택공급지 등으로 이용

▶ ⑤ 남부탄약고

- 반환면적 : 1,951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육군 및 해군의 탄약고 등으로 사용
 - 환 후 토지개량사업 등이 시행되고, 현재 주로 농지로 이용되며 일부는 골프장으로 이용 중

▶ ⑥ 나이사토 통신소

- 반환면적 : 105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식료보급기지, 미군 민정부 등 대지로 사용
 - 반환 후 현재 휴양시설 대지로 이용

▶ ⑦ 치넨 보급지구

- 반환면적 : 1,816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육군의 병영, 모터풀, 창고, 주택 등의 용지 및 특수부대의 기지로 사용
 - 반환 후 골프장, 공원, 복지시설, 체육센터 용지로 이용

▶ ⑧ 마키미나토 보급지구(주택지구)

- 반환면적 : 1,951천㎡ / 미반환면적 : 0㎡ / 반환율 : 100%
 - 장교, 하사관 및 군용의 주택지로서 사용되고, 풀(pool), 스케이트(skate), 골프장, PX,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 배치
 - 반환 후 현재 나하 신도심 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시행자 : 도시재생기구[UR])

3) 필리핀 수빅만 & 클락 경제자유구역

(1) 수빅만 미군기지 활용

▶ 수빅만 해군기지 연혁

- 1572년 스페인 해군이 발견, 1884년 무기고 및 선박수리소 설치
-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미국 점령
- 1942년 ~ 1945년 일본 점령
- 1947년 군사기지조약(Military Bases Agreement) 체결로 제7함대 해군기지로 활용
- 1991년 필리핀 상원, 미 군사기지조약 연장 거부, 기지사용 협정의 만료
- 1992년 11월 미군철수 완료
- 1992년 3월 수빅만 특별경제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1992년 미군기지의 폐쇄로 인해 해군기지에서 30,000~3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 추가적으로 기지관련 서비스와 산업에 50,000~70,000개의 일자리 감소

▶ 수빅만 관리청(SMBA)의 역할

- 필리핀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1,600개의 국내외 투자가들에 의해 100억불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01,651개의 일자리 생성됨
 - 면적은 67,452h으로 15개의 부두 조성
- SMBA Charter(RA 7227)에 근거하여 수빅 미군기지를 자유무역항으로 전환하고 수빅만관리청(SMBA)이 이를 담당하여 군기지 전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의 하나로 성장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14일간 비자면제, 수빅-클락에 대한 특별 비자발급



[그림 3] 수빅만 부두시설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 한진중공업이 20억불을 투자하였고 ‘15년에는 수빅조선소 직간접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33,863인을 고용
- 수익구조는 해양물류, 공업 및 상업용지임대, 관광 등이며, 2015년의 운영수익은 2014년 대비 13% 증가

<표 7> 수빅만 관리청 전략사업구조

구분	2014	2015	증가
해양 물류	1,307 M 페소	1,588 M 페소	21%
공업 및 상업용지 임대	1,115 M	1,147 M	3%
관광	19.6 M	20.0 M	2%
전체 운영수익	2,442 M	2,755 M	13%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 수빅만 자유무역항을 지정하고 수빅만 관리청 신설

- 1992년 「기지전환 개발법」(Bases Convension and Development Act)로 수빅만 자유무역항 SBF(Subic Bay Freeport)으로 지정
 - 필리핀 의회는 법 7227(RA 7227)을 통과시키고, 제13장에서 면세와 인센티브 권한을 수빅관리청에 부여

- 올롱가포 시장이던 Richard Gordon이 초대 의장으로 임명
- 총 67,500ha 규모로써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최대의 수출공단 및 자유무역항 건설

▶ 수빅 자유무역항 마스터플랜

- ① Subic Gateway
 - 쇼핑몰, 컨벤션센터, 업무용 호텔 입지
- ② Batann 테크노파크
 - 제조업, 관광산업, 연구·교육시설, 실버산업
- ③ Ilanin Resort 단지
 - 레크레이션, 리조트 단지
- ④ 수빅만 공단(Subic Bay Industrial Park)
 - 수빅만 개발관리센터(SBDMC)가 관리
- ⑤ 수빅 테크노파크(Subic Techno Park : STEP)
 - SBMA(수빅만관리청)와 일본 국제개발공사(JADO), TOYO 건설, Kawasho Corp., Bank of Tokyo Mutsubishirks 합작투자
- ⑥ 주택임대단지
 - 과거 미군을 위한 숙박시설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 (2,000세대)

▶ 수빅만 경제자유구역 성공요인

- 1992년 법률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한 점
 - 1991년 클락 공군기지 철수 후 필리핀 공군의 클락기지시설 훼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SBMA(수빅만관리청)과 민간회사의 주도하에 개발 추진
 -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기 바로 전인 92년 3월 수빅해군기지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한편 SBMA(수빅만관리청)를 설립
 - SBMA는 수빅만 자유무역항의 소유주으로써 관리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행정권을 갖는 자치행정기구이기도 함
- 사업의 성공을 이끈 리더와 비전

- 저-중밀도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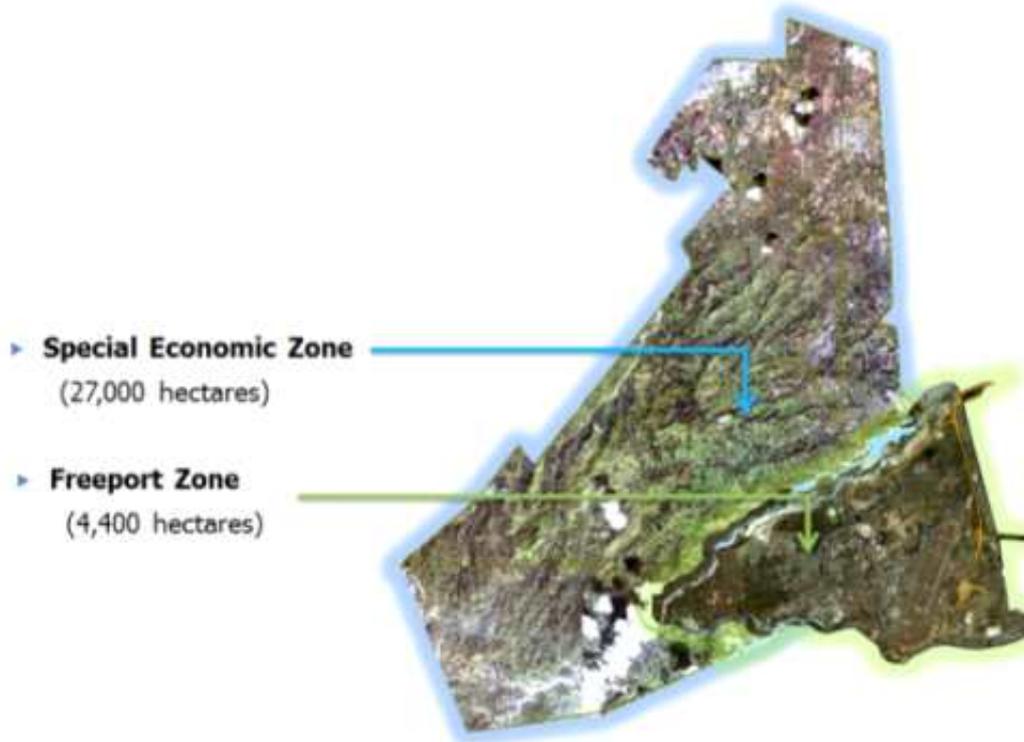
(2) 클락 미군기지 활용

▶ 클락 공군기지 연혁

- 1946년 1월 : 미 제13공군단이 필리핀의 Clark로 이전
- 1947년 3월 : 필리핀 미국간 군사기지협정 체결(99년간 미군기지 사용 보장)
- 1951년 8월 : 필리핀 미국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 1979년 1월 : 개정 군사기지 협정 비준
- 1986년 9월 : 필리핀 정부, 군사기지협정 연장 거부
- 1991년 4월 : Pinatubo 화산활동 감지
- 1991년 6월 : Pinatubo 화산 폭발
- 1991년 9월 : 필리핀 상원, 군사기지협정 연장 거부, 동 협정 종료
- 1991년 11월 : 미공군, Clark 공군기지를 필리핀 공군에 인도함으로써 미 공군기지 폐쇄
- 1992년 10월 : 수빅 주둔 해군 철수 완료
- 1993년 4월 : 라모스 대통령, 클라크 공군기지부지를 경제특구 지정 및 Clark 개발공사 설립

▶ 클락 경제자유구역 개요

- 위치 : Pampanga주 Angeles시 Clark Field 및 Tarlac 주 일부 지역
- 면적
 - Total : 31,400ha(Main Zone : 4,440ha / Sub Zone : 27,000ha)
- 마닐라 대도시권, 수빅과는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위치



[그림 4] 클락 자유무역항 면적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 클락 개발공사(CDC)

● 클락 개발공사(CDC)

- CDC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 특징

- 1992년 제정된 「기지전환개발법(BCDA)」에 근거하여 92년 4월 ‘클락 경제특구’ (CSEZ), ‘CDC’ 설립(라모스대통령)
- BCDA에 초기 운용자금을 받았으나 차후에는 독자적으로 운용
- CDC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계획 결정(CDC는 정부소유기업으로 우리나라 공사와 비슷한 성격)
- CSEZ에는 3개의 공단, 제조시설, 농업단지, 골프장(3개), 카지노, 국제공항 등 종합 복합시설이 입지

● BCDA와의 관계

- 산하조직으로 반환받은 공항시설 관리 및 개발 육성

- BCDA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사업추진 수행
- 지방정부와의 관계
 - 지방정부의 경우 CD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CDC에 사업요구서를 제출
 - CDC에서는 지방정부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CDC사업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지원 (CDC 사업에 필요한 도로, 교육시설 등 Infrastructure 및 태풍, 홍수피해 지원)
 - CDC와 지방정부간 지원에 대한 조정 및 갈등해결은 상호협의체인 MCAC(5개 지방 정부 및 CDC회장 참여)에서 상호조정 반환 후 활용현황

▶ 클락 경제특구(CSEZ : Clark Special Economic Zone) 지정

- 3개의 공단(Business or Industrial Park)을 포함한 제조시설, 농업단지(Plantation), 리크리에이션 시설, 국제공항 및 관련시설 등의 복합시설로 활용
 - 제조업, 생태도시, 레저도시, 서비스업의 복합도시
 - 2011년을 기준으로 64,055인의 일자리 창출, 수출은 39.1억 달러
 -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590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그중 한국은 26%, 미국 21%, 일본 17% 순임



[그림 5] 클락 토지이용계획

자료 : 클락개발공사 자료.

▶ 공공사업주체가 임대, 관리

- 클락 경제특구의 소유주는 ‘기지전환개발청’ 으로,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로서 군사기지의 전환 및 개발을 담당
 - 필리핀은 미군기지의 철수와 거의 동시에 기지전환개발법(BCDA)를 제정하고, 개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반환미군기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및 인허가 및 규제해제를 실시
- 관리주체는 BCDA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클락 개발공사’ 이며 토지는 임대
 - 반환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클락 개발공사’ 가 민간에 임대
 - 임대를 통해 공공에서 용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를 원하는 민간 또한 토지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가능
-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 수빅과 클락의 경우 각각 공항과 항만이 존재하지만 활용도는 낮아 마닐라로부터의 수송이 중요
 - 북부 Luzon 고속도로 완공으로 마닐라에서 40분거리로 접근 가능
 - 수빅 국제항구, 물류 IC, SCTex, North Luzon Expressway 등 기반시설 확충

▶ 일자리 중심으로 대상지의 차별화

- 2011년 기준 64,000명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변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동반 성장 가능
- 미군기지의 내부 도로나 시설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음

4) 해외사례 시사점

▶ 오키나와 현민의 미군기지 철수요구

- 2004년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미해군 CH-53D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 1995년 미군무원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 등 미군에 다수의 사건사고 발생
- 오키나와 전투시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다수의 희생에 의해 일본군에 대한 저항

의식 내재

- 미군주둔에 의한 수익은 점차 감소하여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인식
- 미군 이전지 개발은 오키나와의 잠재력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중남부 도시권 주둔 군용지 6개소에 대한 광역계획 수립(2013)

- 부지별 계획이 아니라 광역적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전체발전과 연계하여 100만 도시형성을 목표
- 미군 공여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CC)에서 6개 시설에 대한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됨에 따라 오키나와 중남부 지역에 대해 시정촌 단위사업이 아니라 현단위 광역계획을 수립

▶ 공공사업주체가 임대·관리하고 토지매각을 지양

- 클락경제구역 개발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기지전환개발법(BCDA)를 제정, 개발전담기관을 설립, 경제특구로 지정
- 토지매각을 지양하고 BCDA가 100% 지분을 보유하여 토지는 임대방식으로 반환 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클락 개발공사’가 민간에 임대
- 임대를 통해 공급에서 용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를 원하는 민간 또는 토지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가능
- 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한 개발기반 재정비
- 필리핀 사례와 같이 공항과 항만이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아 마닐라로부터의 수송이 개발에 중요
- 해당 반환부지에 Luzon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마닐라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여 개발 여건을 향상시키고 투자기반을 다짐

▶ 기존의 기능과 지장물 활용

- 클락과 수빅은 기존 미군기지의 내부 도로나 기존 시설물들을 재활용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여

- 미국 리켄배커와 같이 기존 군공항 시설의 이점을 살려 복합물류단지로 재편
- 독일 풀다사례는 지장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성비를 절약하고 신속하게 기능을 유치하여 지역민의 일자리를 복구

▶ 또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다는 점, 필리핀은 토지를 장기임대 한다는 점이 특징

-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BlmA가 있으며 지자체의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 자본 유치

〈표 8〉 반환공여지 개발 해외사례 검토

국가명	토지소유권	반환지 전담조직	사업방식
독일	국가	있음(BlmA)	토지매각 후 민간, 지자체가 개발
필리핀	국가	있음(BCDA)	토지장기임대
일본	국가, 민간, 지자체 등	있음(방위시설청)	구획정리 등 환지처분

▶ 우리나라 역시 미군공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행정 관청 설립이 필요

- 우리나라 전국대비 공여구역 87%, 반환공여구역 9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대하여 미군공여지 관련 행정관청 설립의 지속적 건의와 이를 위한 전략이 필요

III. 법제도 고찰

1.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며,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됨(법 제1조)
- 현행 법률(제12844호, 2014.11.19.)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시도지사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법 제7조)
- 둘째,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활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임. 국방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도록 하고(법 제12조제1항),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함(법 제12조제7항). 그리고 지자체의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편입돼야 하는 토지와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입 소요비용의 60%이상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⁶⁾
- 셋째,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임.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신설의 특례(법 제15조)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음.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외국교육기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매입경비 보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관의 설립·운영의 특례(법 제18조)는 사립학교법 등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교육재정지원의 특례(법 제19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음. 그 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개발(법 제20조, 제21), 고용안정사업 지원(법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지원(법 제24조),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법 제26조) 등이 있음

〈표 9〉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근거

구분	대상지역	내용	비고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종합계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를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가능	제13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 가능	제15조
외국인투자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가능	제1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학교의 이전, 증설 가능	제1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지원도시사업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	제1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가능	제19조
고용안정사업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실시	제23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알선 및 대부 가능	제27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종합계획, 원도시사업구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감면 가능	제35조
	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가능 인·허가 등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인·허가 등의 의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간주	제29조

자료 : 행정안전부, 2016.

2. 관련법과의 비교

- ▶ **용산특별법과 평택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특별법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 확인**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할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국비지원 비율은 낮음
 - 반환공여구역이 밀집된 동두천 등에서는 국가지원 차등화와 별도의 특별법 제정 요구 제기
 - 규제 특례조항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조세 및 부담금 감면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

〈표 10〉 반환 공여구역 지원 관련 특별법 비교

구분	용산특별법	평택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특별법
목적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및 관리하고 주변지역 체계적 정비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국비 보조율	토지 : 무상제공 공원조성비 100%	발전계획 : 80% 지방산단 : 100% (기반시설)	공여구역 국유지 토지매입 : 60~80%(도로, 공원, 하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50%
장점	지방비 부담 없음	낮은 지방비 부담 비율(20/%)	-
단점	-	-	제한된 국비보조 높은 지방비 부담 비율

자료 :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집(2016).

3. 법적 시사점

- ▶ **공법적 규제 완화 필요**
 - 반환 공여구역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규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규제 법률이 특별법에 우선

하고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상 여러 규제로 인하여 실제 사업진행 시에는 애로를 겪게 됨

- 지역개발에 대한 실효성 증진을 위해 공법적 규제보다는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활용계획이 지역환경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공법적 규제는 특례를 두어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규제는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활용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는 최소화되면서 원활한 사업이 가능함

▶ 도시기본계획과 활용방안의 계획간 일관성 유지

-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시장·군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이는 도시기본계획이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과 아울러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임
-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도 장기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수립되어야 계획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활용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도시기본계획의제의 최소화

- 도시기본계획의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목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첫째,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계획에 개발방향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의제를 통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에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셋째, 낙후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준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종합적인 계획을 담아 도시 전체를 조망한 이후 의제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넷째, 특정 사업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도시라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제를 받고자 하는 계획내용 이외에 당해 도시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탄력적 재정지원

- 미군 주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결정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사업수요로 인한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수요의 변화와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의 증가에 연계하여 국비지원도 탄력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화성시 67.1%, 창원시 60.9%, 파주시 54%로 취약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횡성군 13.6%, 대구 동구 15.7%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경기 북부 지역의 동두천시 24.2%, 의정부시 41.9%로 경기도의 평균의 59.3%에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의 국고보조비율로는 주한미군에 토지를 공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국고지원 비율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80%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

IV. 관련계획 검토

1. 정부 계획 검토

1)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 발전종합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주한미군이전 검토(1988년~20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비준(2004년)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제정(2004년) 및 개발계획 확정(2005년)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20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2008년)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2008.1.15.)
 -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2009.2.2.) : 행안부 소관 사업규모 확정
- 종합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2008년~)

▶ 발전종합계획 개요

-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 (목적)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대상)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⁸⁾개 읍·면·동
- (수립절차)
 -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시·도지사) → 발전종합계획(안) 제출(시·도지사 → 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7)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도 폐지

8) (공여구역주변지역) 46개 시·군·구,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30개 시·군·구, 178개 읍·면·동

(2) 현행 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 추진실적

- (행안부 사업) 주변지역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집행(국비기준 97%)하였으나,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는 반환지역⁹⁾으로 투자율(국비기준 56%) 낮음
- (타부처 사업) 일부 타당성 낮은 사업포함, 부처 관심부족 등으로 투자율 부진
 - 규모가 큰 부처 중 농림부(110%), 환경부(99%)는 양호한 투자실적을 보이나 문체부(30%), 국토부(30%) 등은 투자율이 저조
- (지자체 및 민간 추진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건별 규모가 큰 사업이 대부분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율 저조
 - 주민인식조사 결과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비교적 높음¹⁰⁾

〈표 11〉 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총 지원액	투자금액(~2017)	잔여사업비	투자율(%)
총 지원액		428,184	102,425	325,759	23.9
국 비		41,741	28,488	13,253	68.2
행안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¹¹⁾	13,442	7,521	5,921	56.0
	주변지역 도로개설 (구, 행자부)	9,091	8,774	317	96.5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구, 안전처)	754	472	282	62.6
타 부처 사업(12개 부처) 등		18,454	11,721	6,733	63.5
지방비		59,331	31,053	28,278	52.3
민자 등		327,112	42,884	284,228	13.1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9) 토지매입비 지급 대상 18개 기지 중 9개 기지 미반환

10)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이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18.7%에 불과(경기도 동두천·파주·포천 주민(116명))

11)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 또는 공원으로 개발 시 토지매입비의 60%~80% (평균 68%)를 국비 지원

▶ 문제점(지속지원 필요성)

- 이행을 저조로 당초 계획년도인 2017년 내 완료 불가
 - 미군반환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일부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이행률이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계획목표 실현 불투명
 - 지역별 집행률 상이로, 중단 시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¹²⁾
- 공여지역, 반환지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
 - 지역 여건분석결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여전히 쇠퇴 또는 낙후¹³⁾
 - 반환공여지의 경우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공동화가 우려¹⁴⁾
- 공여지역, 반환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여전히¹⁵⁾
 - 영평사격장 등 미군기지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전히¹⁶⁾

(3) 발전종합계획 변경

▶ 기본방향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지속지원 등 계획 이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신뢰도 확보
 - 단, 기존 계획사업 전면 재검토 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타절
 - 계속사업은 여건변화를 반영 사업기간, 내용 등 일부 변경
- 지자체가 발굴한 신규 사업의 경우 주민이 원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자체가 수립한 종합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하고 국가재정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국비 지원금액은 (반환)공여구역면적, 주변지역면적, 주변지역인구를 고려하여 배분

12) 토지매입비의 경우 5개 시·군은 국비 지원완료되었으나, 동두천은 3%정도만 지원

13) 전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총 338개의 중 158개(46.7%), 면적기준 4,925km²(40.6%)가 쇠퇴지역에 속함.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총 165지역 중 126개 지역, 면적기준 4420km²(81.4%)이 여전히 낙후한 것으로 나타남(경기연, 2016)

14) 부산 하야리아(시민공원), 동두천 캐슬 일부(동양대 이전)만 개발 완료됨

15) '대통령님, 미 영평사격장 폐쇄해 주세요' (6.13, 인천일보),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민원해결 주 민간담회' (8.3.연합뉴스)

16) 지역 내 주한미군의 주둔 혹은 주둔 후 반환이전이 지역경제, 주민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비율(59.5%)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경기도 동두천·파주·포천 주민(116명))

▶ 추진경과

-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설명회 : 2016.4.28.
- 지자체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 2016.4.28.~6.30.
- 전문가 타당성 평가 : (1차) 2016.7.19.~29, (2차) 2016.8.19.
- 관련 부처 1차 협의 : 2016.9월~12월
 - 지자체가 수립한 2차종합계획(안) 협의. 신규 국비 약 3조원
- 관련 부처 2차 협의 : 2017.1월~8월
 - 1차의견 반영한 종합계획변경(안) 협의. 현행 계획 국비범위내에서 조정
- 최종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치 : 2017.9월~10월

▶ 변경계획(안)

- 사업기간 : 2008~2017년 → 2008년 ~ 2022년
 - 2022년이면 주한미군 평택이전사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¹⁷⁾
- 사업규모 : 526건, 42조 8,184억원 → 536건, 42조 3,726억원
 - (완료사업) 2017년말까지 231건 완료 예정(5조8,046억원, 국비 1조8,353억원)
 - (계속사업)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등 시기 미도래로 진행 중인 사업 127건(34조 2,009억원, 국비 1조 5,165억원)은 계속 추진(36건 변경 포함)
 - (제외·타절) 기존 사업 중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¹⁸⁾· 타절¹⁹⁾
 - (신규사업) 현행 국비지원규모 4.2조 유지하고, 제외·타절 사업 국비만큼 신규사업 131건 반영(2조 3,504억원, 국비 6514억원)²⁰⁾

17) 다만 2023년 이후에도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필요

18) 미착수 사업 : 123건, 1조 7,591억원

19) 사업축소 등을 통한 조기종료 : 45건, 1조 537억원

20) 제외사업 국비(2,719억) + 타절사업 잔여 국비(3,872억) - 계속사업 변경분(77억)

〈표 12〉 변경계획(안) 예산

(단위 : 억원)

[현 행]						[변 경 (안)] ²¹⁾					
구분	건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구분	건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526	428,184	41,741	59,331	327,112	계	536	423,726	41,741	56,037	325,948
완료	231	58,046	18,353	25,270	14,423	완료	231	58,046	18,353	25,270	14,423
계속	127	342,009	15,165	20,414	306,431	계속	129	338,678	15,243	20,124	303,311
타절	45	10,537	5,503	3,209	1,826	타절	45	3,498	1,631	1,691	176
제외	123	17,591	2,719	10,438	4,433	신규	131	23,504	6,514	8,952	8,038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 신규사업 변경계획(안) : 131건, 2조 3,504억원(국비 6,514억, 지방비 8,952억, 민자 8,038억)

● 사업 유형별 현황

- 도로개설사업은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지자체 선호도가 높고(60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15건) 및 관광시설(12건) 확대 반영

〈표 13〉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 유형	사업 개수	총 사업 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합 계	131	23,504	6,514	8,952	8,038
도로개설	60	6,865	3,349	3,516	0
문화·복지시설	15	2,898	1,384	1,514	0
관광시설	12	9,012	387	2,469	6,156
기반시설(도로제외)	29	2,321	1,150	1,171	0
기타	15	2,408	244	282	1,882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 (도로개설) 60건 6,865억원(국비 3,349억, 지방비 3,516억)²²⁾
- (주요사업)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경기도 포천),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경기도 의정부)
- (문화·복지시설) 15건 2,898억원(국비 1,384억, 지방비 1,514억)²³⁾

21) 전체 사업규모가 감소(4,458억)한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이행률이 저조한 대규모 민자 및 지자체 사업을 제외·타절하였기 때문임

22) (추진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23) (추진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26조

- (주요사업) 공동체 활성화 복지커뮤니티 거점센터(제1권역) 신축(대구광역시 남구),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경기도 의정부)
- (관광시설) 12건 9,012억원(국비 387억, 지방비 2,469억, 민자등 6,156억)²⁴⁾
- (주요사업)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사업(경기도 동두천), 마라해양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제주도 서귀포, 환경부 사업)
- (기반시설(도로 외)) 29건 2,321억원(국비 1,150억, 지방비 1,171억)²⁵⁾
- (주요사업)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강원도 춘천), 지보면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경북 예천, 환경부 사업)
- (기타) 15건 2,408억원(국비 244억, 지방비 282억, 민자등 1,882억)²⁶⁾
- (주요사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경기도 동두천, 국토교통부 사업), 대청동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대전 동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표 14〉 추진 주체별 사업 현황

주체	사업 개수	총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합 계	131	23,504	6,514	8,952	8,038	
행정 안전부	소계	91	9,217	4,229	4,987	0
	구.행자부	83	9,078	4,140	4,898	0
	구.안전처	8	179	89	89	0
문화체육관광부	10	2,567	1,065	1,502	0	
국토교통부	3	1,313	440	150	723	
환경부	10	1,141	676	465	0	
농림축산식품부	8	166	80	52	34	
해양수산부	1	31	15	16	0	
산림청	1	16	8	8	0	
민자	2	1,214	0	32	1,182	
지자체 자체	5	7,839	0	1,740	6,099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 기존사업 변경계획(안)

- 여건변화로 계속사업 중 36건 계획변경(국비지원금액 78억원 증가)
 - (국비변경)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변경 6건, 낙찰차액 발생 등 주변지역사업비 변경 5건
 - (국비불변) 사업기간 또는 내용 일부 변경 25건

24) (추진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6조

25) (추진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26) (추진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27조

〈표 15〉 계속사업 변경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증감 (단위 : 억원)				
	당초	변경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합 계	36	38	-3,332	78	-290	-3,120	
국비변경	토지매입비	6	6	219	139	80	0
	주변지역 지원	5	5	-16	-61	45	0
국비불변 (기간·사업내용 등 변경)	토지매입비	11	13	12,707	0	27	12,680
	주변지역 지원	13	13	-18,392	0	108	-18,500
	지자체 자체사업	127	0	-550	0	-550	0
	민자사업	0	1	2,700	0	0	2,700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 (주요사업) 캠프롱 토지매입비 변경(강원도 원주), 짐볼스 훈련장 민간개발(경기도 동두천)

(4) 향후 계획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관련부처 및 시·도 통보(2017.10.26.)

- 발전종합계획 내 사업 추진(~2022년)
 - 행안부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하여(2018년 전체 832억원, 신규 100억원) 추진
 - 타부처 사업은 각 부처에서 해당사업 예산(대부분 지특)으로 반영 추진

2)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 기본방향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기본원칙을 전제로 상정안을 검토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은 일단락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은 제1차 사업에서 완료하고 제1차 주변지역 도로사업 사업은 대부분 완료
 - 민자 의존도 지양 : 민간투자 사업비 집행률이 지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민자 의존

27)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

도가 높은 사업은 지양

- 문화·복지 사업 투자 제고 : 제1차 사업은 SOC 위주였기 때문에 제2차는 주민수요가 높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으로 미군주둔 피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문화복지 혜택 제공
- 실행가능성 높은 계획 위주 사업구성 : 중장기 예산계획 반영 여부, 토지확보여부 등 행정적인 절차 여부를 따져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계획 위주의 사업선별
- 토지확보방안 검토 : 토지매입, 민자사업 유치가 어려운 대규모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자체 토지확보방안 필요
- 지원사업 범위 확대 : 주거환경개선, 농촌지역지원, 일자리 확충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그림 6]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자료 : 경기연구원, 2016.

▶ 지원사업 선정기준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상정(안)에 대한 선정기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의 필요성 및 연계성, 지원사업의 다양성, 사업 타당성, 사업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
 - 첫째, 미군 주둔에 의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등의 피해와 관련성이 높거나 주민 필요성과 수요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 둘째, 지원사업의 다양성 측면으로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특별법 제24조~26조 범위의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문화·복지 사업을 우선 선정
 - 셋째,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은 배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체계성, 및 사업

- 비 적정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 넷째, 행정절차 여부, 토지확보 여부, 지방의회 협의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사업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표 16〉 지원사업 선정기준(안)

구분	지원사업 선정기준
01	공여구역 피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연계성 - 미군 주둔으로 물리적, 경제적 측면과 안전문제 등 피해 구제와의 연관성 - 주민요구시설 또는 주민필요시설 우선검토
02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의 다양성 - 교육문화, 복지시설 등 피해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필요 - 미군 주둔으로 인한 물리적 시설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26조 지원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을 반영하여 다양화 - 단순 SOC사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03	사업의 타당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구체성, 체계성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계획내용의 구체화(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배제)
04	사업의 실행가능성 -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진척도를 담보하는 행정절차 이행여부, 토지확보 여부 등 이행 여부 ※ 행정절차 여부, 토지확보 여부, 지방의회 협의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검토

자료 : 경기연구원, 2016.

▣ 국비지원 기준(신규 사업반영 원칙)

- 행정자치부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회기반,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사업을 반영
 -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만을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중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26조에 해당하는 사업²⁸⁾
 -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신규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미반영

28) 특별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 특별법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

-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나 '17년까지 미지원된 사업비는 이월하여 반영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사회기반, 사회복지, 교육·문화·복지·관광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
- 관련부처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반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 적용
 - 지자체에서 상정한 사업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중복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가능여부 판단
 -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지원비율 기준
- 행정자치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별 국비지원 비율은 반환공여구역 면적, 공여구역 면적, 주변지역 면적, 주변지역 인구를 통해 책정
 - 제1차 발전종합계획 상 가중치 원칙을 준용하여 2015년 현행 통계치를 적용
- 발전저해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여구역 면적의 가중치 25%와 반환공여구역 면적의 가중치 25%를 적용
-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차원에서 주변지역 면적의 가중치 10%를 적용,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범위 차원에서 주변지역 인구의 가중치 40%를 적용

〈표 17〉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별 가중치

시도	공여구역면적(25%)	반환구역면적(25%)	주변지역면적(10%)	주변지역인구(40%)
계	25	25	10	40
부산	0.20	0.11	0.05	1.14
대구	1.35	0.12	0.16	2.05
인천	0.02	0.07	0.04	1.04
광주	0.50	0.00	0.01	0.21
대전	0.05	0.00	0.08	0.22
경기	15.44	24.24	4.45	23.11
강원	0.00	0.45	2.33	1.57
충북	0.01	0.00	0.06	0.28
충남	0.02	0.00	0.28	0.66
전북	4.23	0.00	0.10	0.71
경북	1.25	0.00	1.75	5.62
경남	1.94	0.00	0.49	3.13
제주	0.00	0.01	0.21	0.26

자료 : 경기연구원, 2016.

▶ 제도개선 방안(지자체의 토지매입 비용부담 완화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토지 매입비용의 매칭이 어려운 실정
 - 동두천시는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규모가 3,501억원에 불과하고(재정자립도가 14.67%로 경기도 사군 최하위), 미군공여지 면적은 전체면적의 42%인 40.63㎢로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분할상환 등도 어려운 실정
- 인구 및 경제 저성장, 부동산 경기하락 등에 의해 토지매입, 민자사업 유치에 어려운 대규모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자체 토지확보방안 필요
 - 지자체 요구시 토지장기임대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필리핀 클락 사례 참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에 대한 국가지원(특별법 제14조)²⁹⁾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법 제24~제26조에 한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농촌지역지원, 일자리확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확대 필요
 - 예시) 농촌지역 일자리 : 홍천, 동면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 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 포천, 영평 사격장 주변가구 창호교체

2. 경기도 계획 검토

- ▶ 경기도는 발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발전계획의 변경에 따라 2018년 경기도 역시 전체적인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함
 - 사업예산의 전체 변경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일부 국비와 민자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었음

29) ① 하천, 도로·공원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 보조, ②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기분할상환,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표 18〉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변경 총괄표

구분	건수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합계	증·감	-	1,035,311	51,861	32,607	950,843
	당초	15	1,322,880	178,100	234,726	910,054
	변경	15	2,358,191	229,961	267,333	1,860,897
반환공여구역 사업	증·감	-1	-17,961	-20,839	40,107	-37,229
	당초	13	797,192	160,600	225,492	411,100
	변경	12	779,231	139,761	265,599	373,871
주변지역 지원사업	증·감					
	당초					
	변경					
관련부처·지 자체 사업	증·감	-	-40,000	72,700	-7,500	-105,200
	당초	1	150,000	17,500	7,500	125,000
	변경	1	110,000	90,200	-	19,800
민자사업	증·감	1	1,093,272	-	-	1,093,272
	당초	1	375,688	-	1,734	373,954
	변경	2	1,468,960	-	1,734	1,467,226

▶ 반환공여구역 사업

- 산규사업은 화성시 쿠니 사격장의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며, 의정부, 파주, 동두천의 일부사업이 변경되었고, 2개 사업이 제외됨

〈표 19〉 반환공여구역 신규사업

시군	반환 기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화성시	쿠니 사격장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사업	'18~ '22	417,032㎡	89,600	-	51,600	38,000	반환공여구역의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표 20〉 반환공여구역 제외사업

시군	반환기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 원)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의정부	라파디아	가능지구 재정비 축진	'11~'20	35,121㎡	95,000			95,000	뉴타운사업 해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의정부	에세이온	금의지구 재정비 축진	'11~'20	6,392㎡	16,100			16,100	뉴타운사업 해제(국방부에서 환매조치완료)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표 21〉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시군	반환 기지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 원)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주차장조성사 업	'17~'20	1,451㎡	5,100		5,100		뉴타운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추가 조성
		변경	(라과디아) 주차장조성사 업	'17~'22	4,873㎡	13,650		13,650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공원 토지매입비	'10~'19	33,868㎡	48,336	33,800	14,536		뉴타운해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추가 조성
		변경	(라과디아) 공원 토지매입비	'10~'22	36,324㎡	57,448	40,164	17,284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공원 조성공사	'16~'20	33,868㎡	41,000		41,000		뉴타운해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추가 조성
		변경	(라과디아) 공원 조성공사	'16~'22	36,324㎡	42,100		42,100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국지도로 토지매입비	'10~'22	16,700㎡	24,244	17,000	7,244		도로 개설 면적 및 토지매입 면적 증가
		변경	(라과디아) 국지도로 토지매입비	'10~'22	19,075㎡	35,821	25,073	10,748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공공청사 건립사업	'15~'17	2,469㎡	6,500		6,500		면적 및 사업비 변경 (2,469㎡→3,969㎡)
		변경	(라과디아) 공공청사 건립사업	'18~'22	3,969㎡	35,380		7,909	27,471	
의정부	라과디아	당초	(라과디아) 도서관 건립사업	'15~'17	4,460㎡	16,412		16,412		도서관 건립계획 취소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신축부지로 조정 (4,460㎡→2,960㎡) ※환경부 : 국비84억 지원
		변경	(라과디아)북한 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17~'20	2,960㎡	8,400			8,400	
의정부	홀링위터	당초	(홀링위터)공원 조성 토지매입사업	'11~'19	27,078㎡	97,800	67,400	30,400		공원부지 매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변경	(홀링위터)공원 조성 토지매입사업	'11~'17	27,078㎡	45,899	32,124	13,775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관련부처 · 지자체 사업

- 부처 지자체 사업의 경우 연천 사업이 변경됨
 - 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사업 → 연천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

〈표 22〉 관련부처 · 지자체 변경사업

시군	관련부처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연천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초	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사업	'11~'20	769,040m ²	150,000	17,500	7,500	125,000	사업시행 승인내용을 반영한 사업명칭, 규모 및 사업비 변경
		변경	연천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	'11~'20	691,241m ²	110,000	90,200		19,8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민자 사업

- 민자사업의 경우 화성 우정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신규로 지정되었고,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이 공사비 증가와 면적 추가가 이루어짐

〈표 23〉 민자사업 변경사업

시군구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 원)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의정부	당초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14~'18	648,801m ²	375,688	-	1,734	373,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해제심의 지연,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 • 훼손지복구사업 면적 추가
	변경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14~'20	676,650m ²	482,153	-	1,734	480,419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3. 양주시 공여지역 현황

- ▣ 경기도 공여구역은 총 38개소이며, 반환된 공여지가 총 23개소로 나타남
 - 이는 아직까지 공여구역으로 반환되지 못한 곳이 15개소로 발전계획의 변경 역시 이러한 일환에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반환된 이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공여지역에 대한 반환이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4〉 경기도 공여구역 총괄 현황

시군	기 지 명	면적			반환여부
		계(m ²)	반환(m ²)	지속(m ²)	
경기도		210,611,366 (51개소)	172,523,180 (34개소)	38,088,186 (17개소)	23개소
	경기북부	167,520,921 (38개소)	144,610,113 (29개소)	22,910,808 (9개소)	21개소
	경기남부	43,090,445 (13개소)	27,913,067 (5개소)	15,177,378 (8개소)	2개소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표 25〉 경기 북부 공여구역 1

시군	기 지 명	소재지	면적			반환여부
			계(m ²)	반환(m ²)	지속(m ²)	
경기북부(38개소)			167,520,921	144,610,113	22,910,808	21개소
	소 계		5,902,475	5,853,192	49,283	5개소
의정부 (9개소)	캠프 에세이온	자금동	307,502	307,502	-	○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1동	238,107	238,107	-	○
	캠프 카일	금오동	145,164	145,164	-	○
	캠프 라파디아	의정부동	136,764	136,764	-	○
	캠프 시어스	금오동	129,177	90,086	39,091	○
	캠프 레드크라우드	가능동	836,000	836,000	-	미반환
	캠프 스탠리	고산동	2,457,542	2,457,542	-	미반환
	캠프 잭슨	호원동	1,642,027	1,642,027	-	미반환
	캠프 콩코드	가능1동	10,192	-	10,192	지속공여
소 계			93,556,316	84,866,005	8,690,311	12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릉면	251,532	251,532	-	○
	블스아이 #1 훈련장		85,779,391	78,121,819	7,657,572	○
	- 스토리외 9	진동면	7,107,275	-	7,107,275	지속공여
	- 워리어베이스	군내면	80,926	-	80,926	지속공여
	- 뉴멕시코	군내면	469,371	-	469,371	지속공여
	- 텍사스, 줄루	방목면	4,584,457	4,584,457	-	○
	- 켄사스	방목,진동면	287,287	287,287	-	○
	- 오클라호마	진동면	60,694	60,694	-	○
	- 선착장	파평면	64,701	64,701	-	○
	- 공수훈련장	파평면	5,268,282	5,268,282	-	○
	- 기갑훈련장	장단면	67,763,373	67,763,373	-	○
	- 포장도로	군내면	93,025	93,025	-	○
	블스아이#2 훈련장	적성면	5,628,403	4,595,826	1,032,577	○
	캠프 하우스	조리읍	636,009	636,009	-	○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285,138	285,138	-	○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171,171	171,171	-	○
	캠프 스탠튼	광탄면	271,274	271,274	-	○
	캠프 보니파스(민통선)	군내면	143,773	143,773	-	○
	리버티벨(민통선)	군내면	67,002	67,002	-	○
	캠프 그리브스(민통선)	군내면	236,742	236,742	-	○
	찰리 블록(민통선)	파주읍	27,980	27,980	-	○
	후리덤 브리지	장단면	57,739	57,739	-	○
	파평산 ATC	천현면	162	-	162	지속공여
	소 계		40,628,645	40,628,645	-	2개소
	캠프 님블	상패동	66,681	66,681	-	○
	김볼스 훈련장	탑동동	11,946,576	11,946,576	-	○
	헬리포트	보산동	208,765	208,765	-	미반환
	캠프 캐슬	동두천동	206,979	206,979	-	미반환
	캠프 케이시	보산동	14,145,310	14,145,310	-	미반환
	캠프 호비	광암동	14,054,334	14,054,334	-	미반환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표 26〉 경기 북부 공여구역 2

시군	기 지 명	소재지	면적			반환여부
			계(m ²)	반환(m ²)	지속(m ²)	
포천 (4개소)	소 계		15,108,481	1,460,714	3,647,767	1개소
	바이오넷 훈련장		1,460,714	1,460,714	-	○
	- 로드리게스#1	창수면	4,046	4,046	-	미반환
	- 로드리게스#2	창수면	404,630	404,630	-	○
	- 로드리게스#3	창수면	12,139	12,139	-	○
	- 로드리게스#4	창수면	40,463	40,463	-	○
	- 훈련장320	전곡읍	999,436	999,436	-	○
	신북 릴레이	신북면	53,389	-	53,389	지속공여
	왓킨스레이저(훈련장)	영북면	54,139	-	54,139	지속공여
영평사격장(훈련장)	영중면	13,540,239	-	13,540,239	지속공여	
양주 (2개소)	소 계		11,298,874	11,171,832	127,042	1개소
	모빌 훈련장	광적면	11,171,832	11,171,832	-	○
	캠프 광사리	양주1동	127,042	-	127,042	지속공여
가평 (1개소)	소 계		8,165	-	8,165	
	화악산이븐리치	북면	8,165	-	8,165	지속공여
연천 (3개소)	소 계		1,017,965	629,725	388,240	
	감악산 ASA	전곡읍	194,688	-	194,688	지속공여
	알라모 ASA	신서면	32,711	-	32,711	지속공여
	컨트레이닝 훈련장		790,566	629,725	160,841	
	- 차과탈(7X-145)	미산면	465,890	465,890	-	미반환
	- 훈련장(7X-161)	미산면	163,835	163,835	-	○
	- 훈련장(7X-165)	전곡읍	25,855	-	25,855	지속공여
	- 로드리#17X-166	창수면	70,648	-	70,648	지속공여
	- 로드리#27X-169	영중면	33,544	-	33,544	지속공여
- 로드리#37X-170	영중면	30,794	-	30,794	지속공여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 양주시의 기존 공여구역은 반환 및 반환예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양주시 1읍·4면·6동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과 2 참조)

〈표 27〉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양주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과 2

▶ 현재 양주시는 2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변경

- 일부 지방비와 민자 등이 변경됨
- 따라서 다양한 발전사업을 제안(총 11개 사업)
 -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 양주아트센터 건립
 -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양주시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 광사-만송간 도로개설
 - 양주 체육공원 주변도로 개설
 - 공원묘지 주변지역 진입도로 개설
 - 홍죽-복지간 도로개설
 - 국도3호선 단절구간 확장사업
 - 서정대학 주변도로 개설
 - 회암사지 주변도로 개설 등

〈표 28〉 양주시 2차 발전종합계획 총괄표

구분	건수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합계	증·감	△2	△534,544	27,463	△77,388	△484,619
	당초	13	2,047,100	90,600	313,450	1,643,050
	변경	11	1,512,556	118,063	236,062	1,158,431
반환공여구역 활용	증·감					
	당초					
	변경					
주변지역 도로사업	증·감	-	27,200	15,000	12,200	0
	당초	3	140,400	68,500	71,900	0
	변경	-	167,600	83,500	84,100	0
타부처 사 업	증·감	△2	△149,044	△10,537	△112,588	△25,919
	당초	4	740,900	22,100	239,100	479,700
	변경	2	591,856	11,563	126,512	453,781
민자사업	증·감	△1	△458,700	0	0	△458,700
	당초	6	1,165,800	0	2,450	1,163,350
	변경	5	707,100	0	2,450	704,650
기타 신 규 제안사업	증·감	1	46,000	23,000	23,000	0
	당초	0	0	0	0	0
	변경	1	46,000	23,000	23,000	0

자료 : 양주시청 내부자료.

V.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1.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 현황 분석

1) 양주시 현황 분석

(1)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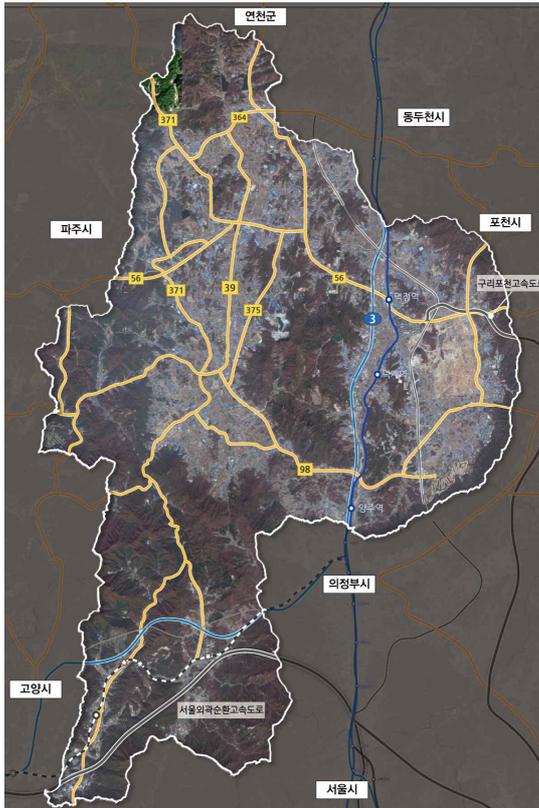
- ▶ 양주시는 국토공간 상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로부터 반경 20km 지점에 위치함
 - 인접 시·군은 북쪽으로는 동두천시, 연천군, 서쪽으로는 파주시, 고양시, 남쪽으로는 의정부시, 서울시 도봉구 및 은평구, 동쪽으로는 포천시와 인접하고 있음
 - 동쪽으로 천보산맥, 서쪽으로 마식령산맥이 둘러싸고 있으며, 양주시 중앙부에 도락산과 불곡산이 위치한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도시공간구조의 기초적인 골격을 형성함

- ▶ 지형 특성상 크게 4개(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생활권역으로 분리되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서는 1도심(회천), 1부도심(광백), 5생활권(덕정, 양주, 장흥, 은현, 남면)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였음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2017년 6월 완공),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3호선, 국도 39호선 등의 도로망을 통해 양주시는 서울시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경기북부의중심거점도시의 역할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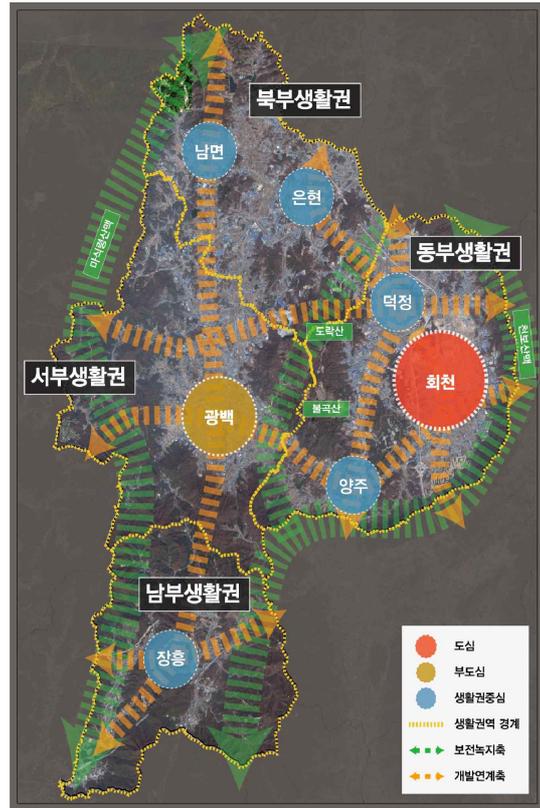
- ▶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의 최대 신도시로 총 1,117만㎡ 부지에 아파트 약 6만 가구, 인구 16만4,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되고 있음. 양주신도시의 크기는 판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기도 포천시·연천군·동두천시·강원도 철원군까지 아우르는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옥정신도시는 7,063㎡, 40,214세대, 회천신도시는 4,107㎡, 21,909세대를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

-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020년 개통 예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회암IC~노원역 구간(2020년 개통 예정),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여건 개선과 함께 신도시 접근성 향상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확정으로 인구유입 증대 전망



[그림 7] 양주시 인접도시



[그림 8] 양주시 생활권

(2) 인구현황

- ▶ 양주시는 2003년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된 이래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205,513명으로 나타남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양주시는 5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인구의 1.6%, 경기북부지역의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대규모 택지개발(양주·옥정 신도시)에 따른 동부 생활권 중심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이 나타남

- 2008년 대비 인구 증감률 현황은 동부생활권에 속하는 회천4동(89%), 양주2동(78%)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외 생활권은 감소율과 적은 증가율을 보임
-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양주1동의 경우 22% 높은 감소율을 보이지만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양주역세권 개발로 인한 인구의 빠른 유입이 예상됨

〈표 29〉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년대비	
										증감	증감률
양주시	179,914	182,106	196,706	200,360	200,310	199,143	202,072	205,184	205,513	25,599	14%
백석읍	28,137	28,438	29,331	29,715	29,664	29,475	29,155	28,953	28,580	443	2%
은현면	7,671	7,658	7,625	7,875	7,469	7,226	7,005	6,865	6,800	-871	-11%
남면	7,950	7,986	7,940	7,899	7,633	7,475	7,757	7,748	7,650	-300	-4%
광적면	12,335	12,165	11,687	12,105	11,961	12,014	11,925	11,772	11,964	-371	-3%
장흥면	10,676	10,588	10,773	10,809	10,483	10,248	10,074	10,202	10,101	-575	-5%
양주1동	7,998	7,405	7,247	7,192	6,917	6,682	6,543	6,369	6,246	-1,752	-22%
양주2동	30,564	35,144	51,039	52,913	53,646	53,864	53,362	53,989	54,403	23,839	78%
회천1동	7,889	7,629	7,352	7,473	7,787	7,738	9,904	10,496	10,386	2,497	32%
회천2동	31,286	30,492	29,454	29,312	29,618	29,305	28,825	28,803	28,752	-2,534	-8%
회천3동	29,619	29,400	29,429	29,909	29,999	30,053	29,513	29,570	29,709	90	0%
회천4동	5,789	5,201	4,829	5,158	5,133	5,063	8,009	10,417	10,922	5,133	89%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6). 외국인제외

▣ 동부생활권(양주동, 회천동) 인구가 양주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함

- 2016년 외국인을 제외한 양주시 인구는 205,510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양주2동(54,403명, 26.5%), 회천3동(29,709명, 14.5%), 회천2동(28,752명, 14.0%) 순으로 나타나 동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구 편재가 나타남



[그림 9] 양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및 증감률 (2008년 대비)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6). 외국인제외

<표 30> 양주시 행정동별 인구 및 고령화율(2017년 5월 기준)

구분	양주시 전체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인구(%)	208,287	100	28,399	13.6	6,689	3.2	7,547	3.6	11,902	5.7	10,147	4.9
고령화 인구 및 비율(%)	27,808	13.4	4,218	14.9	1,403	21	1,478	19.6	2,070	17.4	2,211	21.8
구분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인구(%)	6,138	2.9	54,066	26.0	10,317	5.0	28,608	13.7	29,616	14.2	14,858	7.1
고령화 인구 및 비율(%)	1,392	22.7	5,716	10.6	1,398	13.6	3,366	11.8	3,130	10.6	1,426	9.6

자료 : 양주시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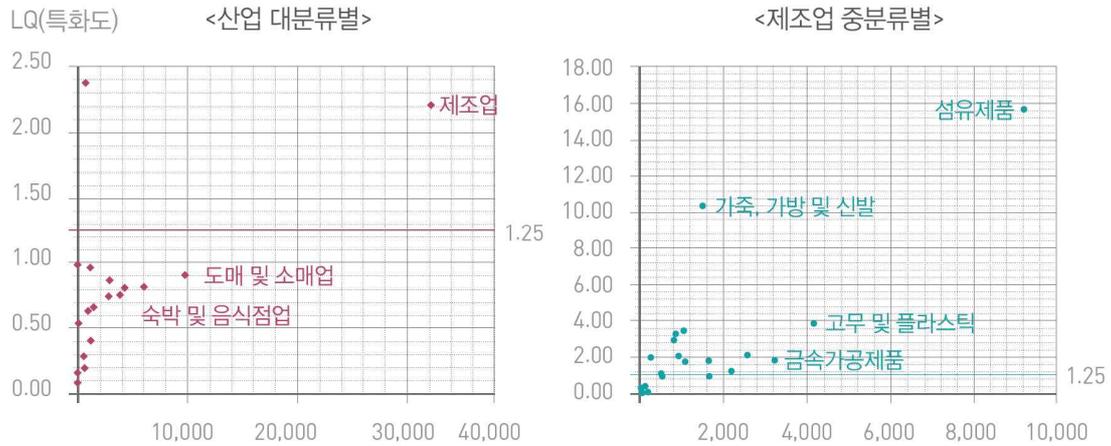
-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의 고령화 지수는 한국평균수준(2015년 13.2% 기준)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고령화에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회천3,4 동 등의 신도시 지역은 인구비중도 높고 고령화 비율은 매우 낮지만 공장밀집지역(은현, 남면) 및 농촌지역(장흥 등)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음

(3) 산업·경제현황

- ▶ 2013년 양주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4.2조원으로써 경기북부 지역 내 총생산액(약 55.5조원) 중7.6%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경기북부 내 5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지역경제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6.1%로 경기북부에서 4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첨단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부재
 - 교통편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여전히 접근성과 생활여건 취약
 - 2014년 경기북부 제조업 종사자의 65%가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에 집중

- ▶ 양주시는 제조업의 집적도가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제조업의 입지계수(LQ)³⁰⁾는 2.21로 매우 높은 수준
 - 양주시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24.4%(3,799개), 종사자수 기준 44.0%(34,032명)로 경기북부에서 높은 수준
 -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이 15.64로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양주시 제조업 종사자 중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25.9%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비중 1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비중 10.1%)의 입지계수도 각각 3.90, 1.88로 높게 나타남

30)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란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지역간 상대특화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입지계수가 1.25 이상이면 해당산업이 지역 내 집적되어 있다고 판단



[그림 10] 2014년 양주시 산업별 종사자수 및 산업특화도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활용

- ▶ 2014년 양주시 제조업체 중 57.2%가 은현면, 남면, 광적면에 위치
- 종사자수의 경우 66.5%가 서북지역에서 종사

<표 31> 2014년 양주시 행정구역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행정구역	사업체수(개)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명)	종사자 비중(%)
양주시	3,799	100	34,032	100
백석읍	322	8.5	2,060	6.1
은현면	735	19.3	6,705	19.7
남 면	565	14.9	8,049	23.7
광적면	874	23.0	7,866	23.1
장흥면	93	2.4	532	1.6
양주1동	183	4.8	578	1.7
양주2동	232	6.1	1,177	3.5
회천1동	290	7.6	2,772	8.1
회천2동	211	5.6	2,266	6.7
회천3동	82	2.2	543	1.6
회천4동	212	5.6	1,484	4.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 ▶ 양주시 전체 등록공장수는 2016년 기준 2,062개로 전체의 69.7%가 서부 및 북부생활권인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에, 동부 생활권인 양주동과 회천동에 29.0%의 공장이 입지
- 서부 및 북부생활권에 공장의 입지가 집중됨

〈표 32〉 사업체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 (2016년 기준)

구분	1~9인		10~19인		20~49인		50인이상		계	
	공장 수	비율(%)	공장 수	비율(%)	공장 수	비율(%)	공장 수	비율(%)	공장 수	비율(%)
백석읍	110	52.6	52	24.9	38	18.2	9	4.3	209	100.0
은현면	202	50.0	118	29.2	75	18.6	9	2.2	404	100.0
남면	137	45.5	82	27.2	65	21.6	17	5.6	301	100.0
광적면	272	51.9	157	30.0	79	15.1	16	3.1	524	100.0
장흥면	13	52.0	5	20.0	7	28.0	0	0.0	25	100.0
양주1동	41	49.4	18	21.7	18	21.7	6	7.2	83	100.0
양주2동	53	60.2	23	26.1	11	12.5	1	1.1	88	100.0
회천1동	68	44.4	53	34.6	28	18.3	4	2.6	153	100.0
회천2동	44	32.4	39	28.7	37	27.2	16	11.8	136	100.0
회천3동	17	58.6	6	20.7	3	10.3	3	10.3	29	100.0
회천4동	72	65.5	30	27.3	6	5.5	2	1.8	110	100.0

자료 : 팩토리온, “공장등록현황”, <https://www.femis.go.kr/femispo/standrad.cmd>, 양주시 공장등록 통계자료 (2016년 기준)

(4) 교통·SOC 현황

- ▶ 2016년 말 기준 양주시의 총 도로연장은 약 410km이며, 전체 도로연장의 약 83.9%에 해당되는 344km가 개통되어 공용 중에 있음
- 약 66km의 적지 않은 도로가 미개통인 상태로 남아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관련 계획 도로망으로 추정됨
- 전체 도로 연장 중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불과한 반면 지방도가 37.6%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 양주시 도로망 현황(단위:m)

도로등급	전체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연장	비중	연장	비중		
고속국도	10,600	2.58%	10,600	3.08%		
일반국도	44,667	10.89%	44,667	12.98%		
지방도	154,266	37.59%	149,766	43.51%	2,800	4,500
시도	200,810	48.94%	139,190	40.44%		61,620
계	410,343	100.00%	344,223	100.00%	2,800	66,120

자료 :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http://www.rsis.kr/>), 2016년말 기준

- ▶ 양주시는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및 도시개발이 늘고 있음
 - 양주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양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3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구국도 2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국대도 교통량은 증가추세를, 구국도 교통량은 감소추세를 보임
 - 양주시 남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39호선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교통량 급증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부분개통 여부에 따라서 교통량 변동폭이 매우 큼
 - 양주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지도39호선의 교통량 변동폭은 크지 않으며 양주시 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지도98호선의 교통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양주시 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지도56호선은 파주, 양주,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동서간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량도 1~2만대 이상으로 적지 않음

- ▶ 양주시 관내 지방도 중에는 광적과 양주시청을 연결하는 지방도 360호선의 교통량(약 3만 4천대 수준)이 가장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매우 높음
 - 지방도 371호선의 법원~상수 구간, 지방도 375호선의 광탄면사무소 인접 구간의 교통량 역시 일일 약 2만대 수준으로 양주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해당됨

▶ 양주시 관내에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교외선 단선 철도가 개설되어 있음

- 서울시 용산역과 철원군의 백마고지역을 잇는 경원선 전철은 2006년 12월 15일 개통된 수도권 전철구간(용산역~소요산역)과 일반 철도구간(소요산~백마고지역)
-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의 3개 역이 개설되어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8분 시격으로, 비첨두시간대에는 15분~30분 시격으로 운행하고 있음
-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 사업」을 구상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원의 총15.310km 연장의 사업으로 2017년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착수

〈표 34〉 양주시 관내 주요간선도로 교통량 현황 및 추이

도로 등급	노선명	구간	연도					연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속 국도	서울외곽 순환선	호원IC~송추IC	80,424	81,945	88,992	115,282	125,937	11.86%
		송추IC~통일로IC	90,561	91,141	99,489	115,004	124,295	8.24%
국도	3호선	의정부~동두천(대체국도)	-	46,342	40,120	35,540	59,010	8.39%
		의정부~동두천(구국도)	-	29,995	27,190	25,129	15,436	-19.86%
	39호선	벽제~일영(구국도)	19,321	24,745	21,118	22,373	23,698	5.24%
		대지~의정부(구국도)	22,098	22,661	20,665	19,117	20,009	-2.45%
		일영~의정부(구국도)	44,856	40,290	46,261	37,716	16,428	-22.21%
	국지 도	39호선	남~백석(상수)	7,378	7,109	7,070	7,141	7,310
남~백석(가납)			12,876	10,314	14,413	15,208	14,604	3.20%
기산~광적			11,423	8,906	8,235	7,979	8,180	-8.01%
송추~기산			9,897	8,795	9,784	9,448	9,991	0.24%
고양~의정부			8,865	8,841	9,724	9,926	9,796	2.53%
56호선		갈곡~상수	7,850	6,942	2,055	1,992	10,080	6.45%
		상수~회천	21,516	21,807	16,815	18,245	18,457	-3.76%
		선암~덕정	23,698	22,447	24,234	24,503	25,155	1.50%
98호선		회천~포천	17,186	15,421	17,238	15,777	15,600	-2.39%
		광탄~송추	2,997	2,338	2,714	2,862	3,355	2.86%
360호선	광탄~양주	14,160	13,177	14,292	15,622	15,400	2.12%	
	364호선	파주~가납	4,255	4,002	4,143	3,796	4,004	-1.51%
		백석~양주	33,559	32,611	32,738	33,632	34,388	0.61%
		양주~소흘	17,606	28,912	30,544	35,104	34,036	17.92%
	367호선	법원~상수	870	745	696	759	606	-8.64%
		신산~동두천	9,592	8,461	9,623	11,894	11,936	5.62%
	371호선	광적~파주	704	602	686	760	777	2.50%
		의정부~고양	5,896	5,545	6,098	6,720	6,778	3.55%
		고양~의정부	7,723	7,512	7,974	8,077	7,442	0.92%
		법원~상수	16,952	15,910	17,613	17,201	18,818	2.65%
		갈곡~상수	-	-	-	-	2,416	
	375호선	일반56~상수	-	-	-	-	1,894	
효촌~동두천		4,495	5,373	5,604	5,626	5,857	6.84%	
석우~일반3		13,346	16,003	17,467	17,568	20,169	10.87%	
379호선	법원~회천	11,307	10,687	11,231	10,620	11,456	0.33%	
	남면~동두천	5,553	5,164	5,899	6,683	6,791	5.16%	
		가산~회천	5,212	4,932	9,560	7,769	6,928	7.37%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교통량통계연보」

(5) 도시개발현황

- ▶ 양주시 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은 17년 기준 총 1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동부생활권에 편중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옥정·회천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동부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5〉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동부	1 옥정신도시 개발사업	7,063,487㎡, 41,481세대, 106,351명
	2 회천신도시 개발사업	4,107,000㎡, 20,343세대, 56,973명
	3 업상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75,000㎡, 덕정1택지지구 내 업상마을
	4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	덕정역 앞 구도심 일원 덕정 테마거리
	5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마전동일원 300,000㎡, 미래복합형 산단
	6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남방동 양주역 일원 638,840㎡, 도시개발
서부	7 백석(북지지구) 도시개발사업	950,862㎡, 11,288세대, 29,350명
	8 광적면 가남리 도시재생사업	장마당 정비 및 지하주차장 신설 4,400㎡
남부	9 일영 도시개발 추진	1,456,449㎡,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북부	10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및 담장 등 경관정비 L=2.0km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그림 11] 양주시 택지 개발사업 현황도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구분	면적(㎡)	구성비(%)	
총계	310.24	100.0	
도시지역	소계	150.09	48.4
	주거지역	26.39	8.5
	상업지역	0.81	0.3
	공업지역	2.79	0.9
	녹지지역	119.66	38.6
	미정	0.44	0.1
	소계	160.15	51.6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32.43	10.5
	생선관리지역	7.70	2.3
	보전관리지역	28.74	9.3
	농림지역	91.88	29.6

[그림 12] 양주시 용도지역 현황

- ▶ 양주시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 면적 310.24㎢ 중 도시지역이 150.09㎢로 48.4%, 비도시지역이 160.15㎢로 51.6%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 26.39㎢로 8.5%, 상업지역이 0.81㎢로 0.3%, 공업지역이 2.79㎢로 0.9%, 녹지지역이 119.66㎢로 38.6%, 미지정이 0.44㎢로 0.1%를 차지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32.43㎢로 10.5%, 생산관리지역이 7.10㎢로 2.3%, 보전관리지역이 28.74㎢로 9.3%, 농림지역이 91.88㎢로 29.6%를 차지하고 있음
- 양주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면적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부 및 북부생활권에 많은 비중을 보이며, 남부생활권 상단까지 걸쳐져 있음

(6) 보건·복지인프라현황

- ▶ 일반종합시설(지역자활센터, 무한돌봄센터, 기부사업장)
 - 지역자활센터 1개소, 무한돌봄센터 3개소, 기부사업장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운영

〈표 36〉 양주시 일반종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류	소계	시설명	소재지	주요기능
지역자활센터	1	양주시지역자활센터	덕정로	- 근로능력 보유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무한돌봄센터	3	양주시무한돌봄센터 중앙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 위기가정 사례관리 - 복지 자원 발굴·연계·조정 ·통합사례회의 운영·협력 기관 네트워크 구축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부흥로	
		양주시무한돌봄희망센터	평화로	
기부사업장	2	양주기초푸드뱅크	광적면	- 소외계층 식품지원
		연화푸드마켓	평화로	
종합 사회복지관	1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옥정동로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보호서비스 - 자원개발관리

자료 :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252개소, 노인요양시설 4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 노인교실 13개소, 양로시설 1개소운영 중
- 경로당은 252개소에 회원 10,09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광적면(21개소), 남면(23개소), 백석읍(43개소), 양주1동(16개소), 양주2동(41개소), 은현면(20개소), 장흥면(18개소), 회천1동(15개소), 회천2동(32개소), 회천3동(13개소), 회천4동(10개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정신도시 입주예정으로 7개소 증가 예정임

〈표 37〉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합계
노인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0	1	17	42	6	-	252	13	331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2017).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양주시는 복지시설로 거주시설 9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 중
- 거주시설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운영 중
- 지역사회재활시설은 3개소이며, 수화통역, 재활프로그램, 차량운행 이동서비스를 제공
- 직업재활시설은 2개소가 운영 중
- 양주시 장애인관련 지원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가 각각 1개소씩 운영 중

〈표 38〉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류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운영법인(주체)	주요기능	
거주시설 (9개소)	중증	요셉의집	연곡로	4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정기간거주 ·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제공
		행복한복지원	부흥로	24	행복한세상복지재단	
	지적	나루터 공동체	삼승로	30	천주교한국순교복지수도회	
		미리내 공동체	기산로	15	하영사복지회	
		호산나의집	삼일로	35	개인운영시설	
		베들레헴기쁨의집	감악산로	20	개인운영시설	
		보아스 사랑의집	삼일로	29	개인운영시설	
	지체	에바다의집 선교회	그루 고개로	28	개인운영시설	
	공동생활 가정	함께랑	양주 산성로	4	한국장애인부모회 양주시지부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양주시수화통역센터	덕정길	-	한국농아인협회 양주시지부	수화통역, 상담서비스	
	행복한주간보호센터	부흥로	15	행복한세상복지재단	재활프로그램, 교육	
	양주시 생활이동 지원센터	고릉말로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차량운행이동 서비스	
직업재활시설 (2개소)	양주내일장애인 보호 작업장	외미로	30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직업재활	
	지심엘앤씨	부흥로	20	지심사회적협동조합	직업재활	

자료 : 양주시 홈페이지

▣ 청소년 시설

- 청소년 시설은 수련원 3개소, 문화의 집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로 수련관 및 유스호스텔은 부재한 실정운영

〈표 39〉 양주시 청소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수련관	수련시설				상담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쉼터
	수련원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소계			
-	3	-	1	4	1	-	-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2017).

- ▶ 여성·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그룹홈 1개소 운영
 - 어린이집은 274개소에 공립 16개소, 민간 96개소, 가정 155개소, 법인의 7개소가 운영 중
 - 여성복지시설은 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1개소 운영

〈표 40〉 양주시 여성·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형	시설수	유형	시설수	유형	시설수
성폭력상담소	1	아동양육시설	2	공립어린이집	16
가정·성폭력상담소	1	보호치료시설	1	민간어린이집	96
이주여성쉼터	1	지역아동센터	19	가정어린이집	155
건강가정지원센터	1	그룹홈	1	법인의 어린이집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합계	5	합계	23	합계	274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2017).

- ▶ 보건의료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 양주시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진료지원팀, 감염병팀, 의약무팀),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구강보건팀, 모자보건팀, 이동보건팀)를 기반으로 2개소의 보건지소(은남, 장흥), 3개소의 보건진료소(연곡, 봉암, 매곡) 설치운영
 - 종합병원은 부재하며, 병원 13개소, 의원 62개소, 한의원 28개소, 치과의원 37개소이며,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1개소
 - 민간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비한 상급 종합병원 부재

〈표 41〉 양주시 지역보건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인력		
유형		기관수	유형		인력수
보건기관	보건소	1	의사	상근	152
	보건지소	2		비상근	-
	보건진료소	3	치과의사		22
	소계	6	한의사		30
의료기관	병원	13	약사		14
	의원	127	간호사		179
	소계	140	간호조무사		267
지역응급 의료기관		1	기타		103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기관		0.71	합계		767

주. 보건의료기관은 2016년 12월말, 의료 인력은 2015년 기준
 자료 : 양주시 보건행정팀 중장기 업무계획(2017), 경기통계(2015) 내용을 재구성

(7) 관광·문화·체육인프라 현황

- ▶ 양주시 관광자원은 체험시설, 문화시설, 유원지, 역사자원, 농촌체험마을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표 42〉 양주시 주요 관광자원 현안

구 분	주요시설
관광지	기산저수지, 장흥자생수목원, 허브힐, 금바위저수지, 봉암저수지, 어둔리저수지, 원당저수지, 낚시터 등
자연관광자원	북한산국립공원(오봉산), 감악산, 불곡산, 천보산, 칠봉산, 개명산(고령산), 은봉산, 호명산 등
문화예술자원	필룩스 조명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조각 아뜰리에, 송암 스페이스, 장욱진 미술관, 아트비, 777레지던스 등
역사자원	회암사지, 관아지, 양주향교, 권율장군묘, 조소앙선생기념관 등
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양주농악,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나전칠기장 등
체험관광자원	가래비 빙벽, 패러글라이딩, 마구간(승마클럽), 우호정(국궁체험), 트로이목마(천연염색), 행원도예(도자기체험), 양주별산대놀이 체험
체험마을	천생연분마을, 초록지기마을, 맹골마을, 삼하리전원일기마을, 비암장수팜스테이
체험농장	209팜, 맹골사랑발효음식체험장, 차우립, 원학농장, 허브힐, 이고을, 꿈담, 양주자연생태관, 삼훈행복농원, 배양농원, 양명농원 등
역사인물자원	임격정, 김삿갓 등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참고 정리

▶ 문화재

- 총 54개의 국가·도·시지정 문화재가 있음

〈표 43〉 양주시 문화재 현황

구분	계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중요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계	54	4	3	1	1	2	3	7	8	1	9	15
국가지정	44	4	3	1	1	2						
도지정	28						3	7	8	1	9	
시지정	15											15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양주시 2016 주요업무보고서)

- ▶ 양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6개소, 등록박물관 2개소, 등록미술관 2개소, 문예회관 1개소, 지방문화원 1개소 등 12개소가 있으며, 파주시(33개소), 고양시(31개소), 남양주시(25개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은 동부지역에 45개, 서부지역에 23개, 남부 10개, 북부 23개로 대부분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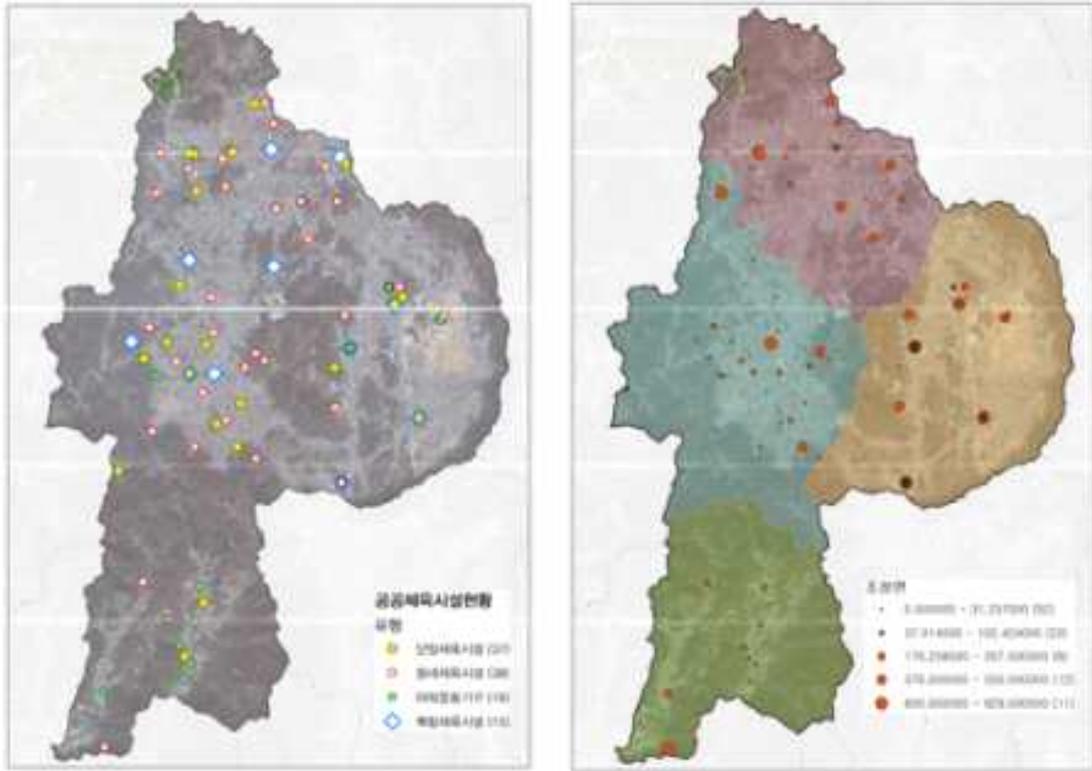
〈표 44〉 양주시 유형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 개소)

유형*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총합
	양주1동	양주2동	화천동	화천동	화천동	화천동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은현면	남면	
A	3	4	1	5	4	1	5	3	2	3	4	35
B	7	-	2	2	-	1	6	7	2	7	4	38
C	2	2	2	1	-	2	2	-	6	-	-	17
D	1	2	-	2	1	-	1	4	-	4	1	16
합계	13	8	5	10	5	4	14	14	10	14	9	106
	45						23		10	23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2017.12

*주 : A 단일체육시설, B 동네체육시설, C 야외운동기구, D 복합체육시설



[그림 13] 양주시유형별공공체육시설(좌) 및 면적별공공체육시설(우)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2) 양주시 권역별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

- ▶ 양주시는 지형 특성상 크게 4개(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생활권역으로 분리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서는 1도심(회천), 1부도심(광백), 5생활권(덕정, 양주, 장흥, 은현, 남면)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였음
 - 따라서 부문별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



[그림 14] 양주시 종합발전계획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1) 동부생활권

① 기본구상 : 신성장중심도시 권역 (Major-Hub + Techno-Hub)

- ▶ 동부생활권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더불어 도심기능 강화와 양주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존산업과 4차산업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양주시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중심도시 권역임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및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심 상업의 기능 강화가 예상됨
- 대규모 신도시를 배후로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암사지박물관, 양주관아지 조성으로 복지 및 문화·관광 기능 강화가 기대됨
- 해당 읍·면·동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② 부문별 주요사업

〈표 45〉 동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산업·경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핵심),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핵심), 스마트제품 혁신지원센터, 양주디지털팩토리, 섬유패션특구,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북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교통·SO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과주~포천) 추진(핵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핵심), 민간자본을 활용한 주차시설공급과 관리(핵심), 시도 도로 확·포장
지역 균형발전	양주역세권 개발(핵심), 노후 산업단지 및 쇠퇴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핵심), 사회기반시설 건설(공특법2차 종합계획 활용)(핵심), 장기방치 택지지구(회천) 관리, 구도심 빈집·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익시설확충, 산복역사 신설 및 민자 복합역사 개발, 지역 간 기반시설 연결
안전	ICT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도시(핵심)
환경	수생태계 하천 복원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핵심), 생태축 복원과지속가능 활용(핵심)
문화·관광	아트센터 건립(핵심),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양주관아지
복지·교육	양주 노인복지관(회천, 덕정), 옥정노인복지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건립



[그림 15] 동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2) 서부생활권

① 기본구상 : 전원형복합도시 권역 (Relaxable-Hub)

- 서부생활권은 광석지구, 백석신도시 등 도시지역 주변으로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의 비도시지역도 넓게 분포하고 있어 주변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중저밀도의 전원형 공간계획 추구. 이와 더불어 복지, 교육, 체육문화, 관광 등 복합적 기능이 어우러진 경기북부 대표 전원형복합도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홍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가래비 공설시장 도시재생사업,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정주환경 및 상업 기능 강화가 예상됨
- 양주시 순환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교통·SOC 계획을 바탕으로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양주대모산성, 다문화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복지·문화·관광 기능 강화가 기대됨
- 해당 읍·면·동 : 백석읍, 광적면

② 부문별 주요사업

〈표 46〉 서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산업·경제	홍죽산업단지
교통SO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 추진(핵심),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우이동~양주~동두천~연천고속도로, 시도 및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지역 균형발전	장기방치 택지지구(광석) 관리, 사회기반시설 건설(공특법 2차종합계획 활용), 지역 간 기반시설 연결, 가래비 공설시장(광적 기반시설정비사업)
안전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핵심)
환경	생태축 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핵심)
문화·관광	기산저수지 관광기반 구축 및 활성화, 다문화음식특화거리, 양주대모산성, 서부권스포츠센터
복지·교육	종합복지타운 추진(핵심), 대상별 복지관 등 시설건립(핵심),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 및 인프라확충(핵심)



[그림 16] 서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3) 남부생활권

① 기본구상 : 문화예술도시 권역 (Art-Hub)

- ▶ 남부생활권은 장흥면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 39호선(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와 국지도 39호선(장흥~상수) 도로건설을 바탕으로 접근성 향상이 예상됨
-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집중 분포하여 경기북부 예술문화관광을 통한 발전 잠재력을 가짐. 또한 송추·일영유원지, 북한산국립공원, 농촌체험마을 등 자연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 등 예술의 집적지로서 관광과 휴양, 힐링 기능 확대가 기대됨
- 해당 읍·면·동 : 장흥면

② 부문별 주요사업

〈표 47〉 남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교통SOC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공사, 우이동~양주~동두천~연천 고속도로, 경기 순환 철도
환경	생태 축 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핵심)
문화·관광	더 퍼스트 장흥 인터내셔널 문화허브 조성(핵심), 장흥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설립, 견고 싶은 예술길 조성,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그림 17] 남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

(4) 북부생활권

① 기본구상 : 생태휴양도시 권역 (Sustainable-Hub)

- ▶ 북부생활권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밀집과 구암, 남면, 상수, 검준, 도하 등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존 산업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또한 신천 주변의 농촌체험마을과 감악산, 효촌 저수지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보급으로 친환경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 지원 기능 강화가 예상됨
- 양주시 순환교통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됨
- 해당 읍·면·동 : 은현면, 남면

② 부문별 주요사업

〈표 48〉 북부생활권 부문별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산업·경제	은남일반산업단지
교통·SO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과주~포천) 추진(핵심),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우이동~양주~동두천~연천고속도로, 시도 및 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균형발전	노후지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설(공특법 2차 종합계획 활용), 지역 간 기반시설연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효촌저수지 일대)(핵심), 남면 신산리 공설시장(남면도시재생사업)
환경	악취관리 강화(핵심), 생태축 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핵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문화·관광	감안산 생태관광지 조성
복지·교육	대상별 복지관 등 시설건립(핵심),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지정 및 인프라 확충(핵심), 농업인회관

〈표 49〉 양주시 반환(대상)공여지 현황

기 지 명	위 치	면적(m ²)		반환시기(년)
		공여면적	반환면적	
모빌 훈련장	광적면, 남면, 은현면, 회천동	11,171,832	11,171,832	2005
캠프 광사리	양주1.2동, 회천2동	127,042	-	지속공여

1) 모빌훈련장

① 입지분석

- ▶ 모빌훈련장은 2005년말 기 반환되었고 광적면, 남면, 은현면, 회천동 일원에 광범위하게 위치하여 면적은 넓으나 모두 임시 훈련장으로 사용
- 현재 취락 및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음



[그림 19] 모빌훈련장 위치도

〈표 50〉 모빌 훈련장 입지분석

위 치	- 양주시 광적면, 남면, 은현면, 회천동 일원
면 적	- 반환공여구역면적 : 11,171,832m ² - 관리구역면적 : 69,938m ²
여 건	- 양주시 북부지역에 동서방향의 선형으로 위치 - 반환공여구역 북측에 경기도 광역교통망인 제2외곽순환고속국도(예정), 국도 3호선 및 경원선,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통과



[그림 20] 모빌훈련장 광역현황
종합분석도



[그림 21] 모빌훈련장 현황전경

자료 : 양주시 내부자료.

② 구역계 설정

- ▶ 양주시 모빌 훈련장은 기동훈련장으로써 확실한 구역계 설정이 어려움
 - 국방부 및 양주시 자체에서 설정한 구역계 면적의 경우 38,292,900m²임

③ 개발가용지 검토

- ▶ 표고 및 경사분석을 통한 가용지 검토
 - 경사도 10도 미만의 평탄한 부지가 71.6%를 차지하고 있음
 - 활용계획구역 전체면적 38,292,900m²중 지형여건상 개발 가능지는 23,430,500m² (61.2%)로 분석

〈표 51〉 표고분석

구분	계	70m 미만	70~150m	150~300m	300m 이상
면적(m ²) 구성비(%)	38,292,900 (100.0)	24,447,200 (63.8)	10,890,400 (28.4)	2,019,700 (5.3)	935,600 (2.5)

〈표 52〉 경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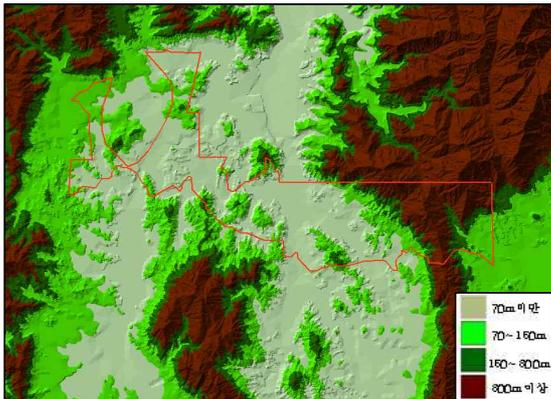
구분	계	10도 미만	10~18도	18~30도	30도 이상
면적(m ²) 구성비(%)	38,292,900 (100.0)	20,523,400 (53.6)	9,233,300 (24.1)	2,529,200 (6.6)	6,007,000 (15.7)

〈표 53〉 개발가능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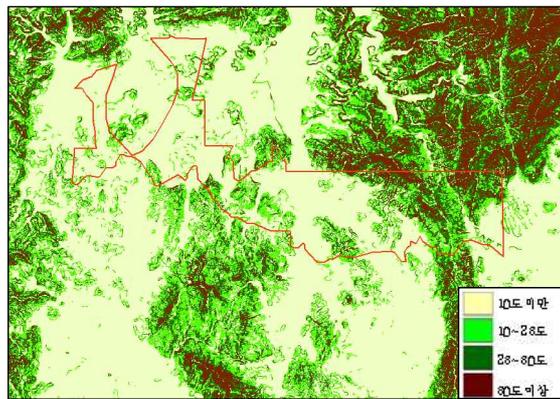
구분	계	개발가능지	개발불능지
면적(m ²) (%)	38,292,900 (100.0)	23,430,500 (61.2)	14,862,400 (38.8)

주) ① ()안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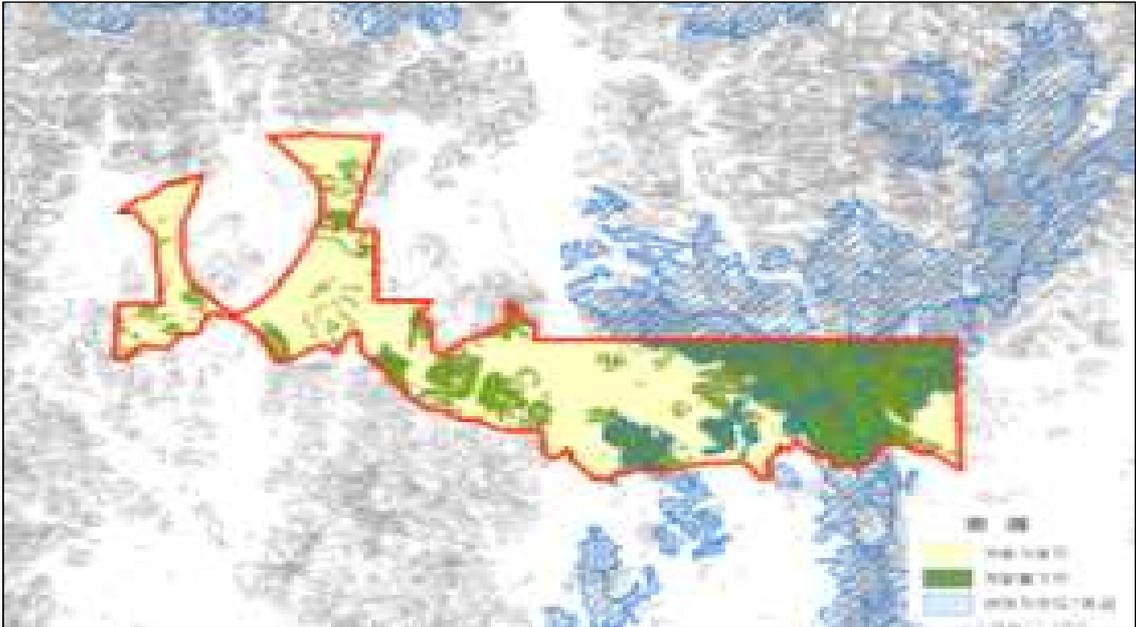
② 양주시 개발행위허가기준(표고 150m 미만, 경사 18도 미만) 적용



[그림 22] 모빌훈련장 표고분석도



[그림 23] 모빌훈련장 경사분석도



[그림 24] 모빌훈련장 개발가능지 분석도 (표고+경사)

④ 현황종합분석

<p>도시계획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임 -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
<p>입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시 북부지역에 동서방향의 선형으로 위치 - 공여구역 북측에 동서방향으로 경기도 광역교통망인 제2외곽순환고속국도(예정) 건설 예정 - 동측에 국도 3호선 및 경원선,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남북 방향으로 통과
<p>자연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발지로서 대부분 평탄한 지형 - 은현면·남면·광적면 소하천(효천천, 입암천, 신천)이 유하 다수의 저수지(신암, 원당, 봉암, 효촌 저수지) 산재 - 회천동 소하천(신천, 청담천)이 유하
<p>인문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현면·남면·광적면 다수의 군부대와 사단 신병교육대 위치 은현면, 남면 인근에 지방산업단지 다수 입지함 농촌체험 특화마을인 맹골마을, 초록지기마을 위치 백수현 전통가옥, 백인결선생묘, 조소양기념관 위치 광적면 효촌리는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이 사건”발생장소 - 회천동 기 계획 택지개발지구인 회천지구, 옥정지구 및 고읍지구 입지 조선시대 최고사찰인 회암사지터, 회암사지박물관 위치

2) 캠프 광사리

- ▶ 양주 캠프 광사리의 경우,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속공여지로 탄약고(면적 127,042 m²)로 사용되고 있음
- 양주 캠프 광사리는 양주시청이 인접해 있으며 전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음
- 또한 광사동 제한보호구역(폭발물) 지정으로 인해 구역 내의 취락지역이 개발규제 및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음



[그림 25] 캠프 광사리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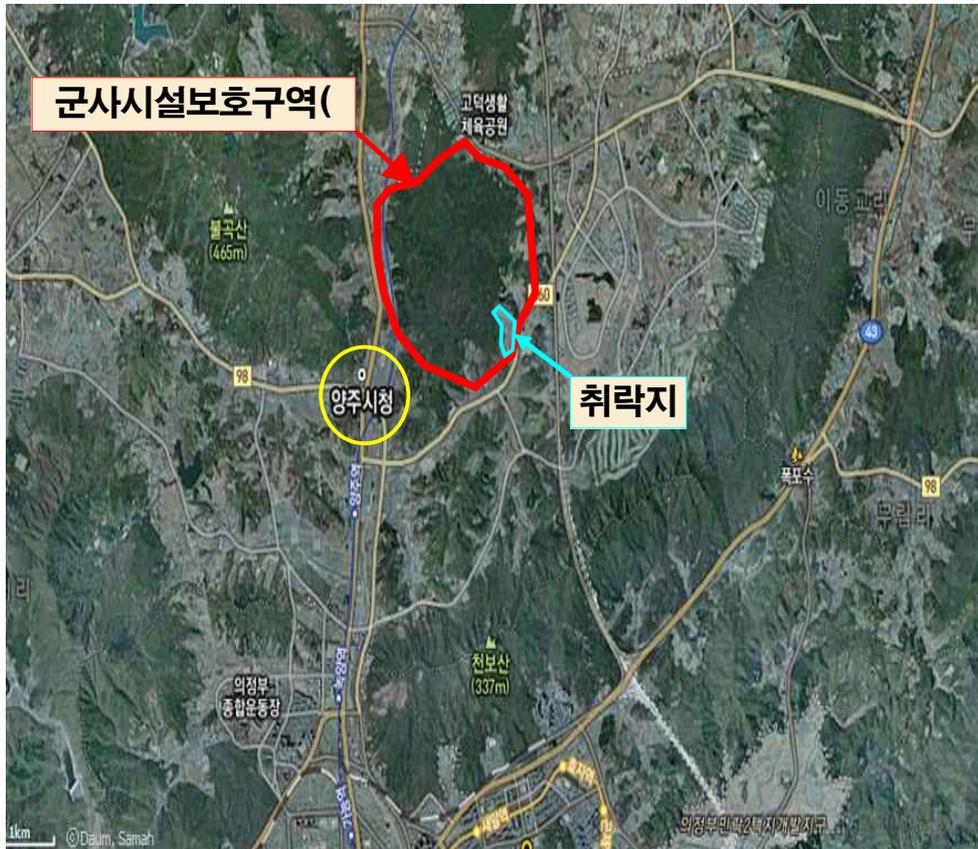
▶ 개요

- 위치 : 양주시 광사동 산102-1번지 등 일원

- 탄약고 고시 : 육군 제2167부대 고시 제08-6호(2008.12.10.)(최초 지정일 : 1994.6.1.)
- 면 적: 3,593,558㎡(폭발 양거리 15만b(파운드) : 663m± α 지정)

▶ 관련 규정 /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1항 2호 다목
- 고시 : 육군 제2167부대 고시 제08-1호(2008.12.10.) [별첨 1]
- 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
- 위치 :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마전동, 산북동 일원



[그림 26] 위치도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연취락지구(광사동 일원)
 - 지정고시 : 양주시 고시 제2009-203호(2009.12.28.)

- 고시면적 : 78,575㎡ (42가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에 1항 2호 다목에 의거 폭발물 관련시설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
 - 현 제한보호구역 전체 면적 : 3,593,558㎡
 - 최장 가로/세로 길이 : 2,358m/2,098m
- 현재 광사동 군사시설보호구역(폭발물) 지정 범위 산정 기준
 - 폭발양거리 15만b(파운드) : 663m ± α
- 규제사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1항1호(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협의기준)에 의거 신규 주택 신축의 행위허가 금지
- 규제로 인한 개발의 제한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에 의한 제한적인 개발행위로 규정
- 주변의 개발사업에 비해 취약지구 주민들의 권리 제한에 따른 역차별 발생

3.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제시

1) 반환(대상)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 ▶ 양주시 일부지역(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은 주한미군 단독 또는 주한미군 및 국군 간 연합 훈련장으로 사용(기갑기동훈련, 포사격 등)되어 실질적인 공여구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반환)공여구역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당해지역을 포함시켜 계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의한 지원 사항 중의 하나인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물리적 구역 검증 및 행정구역 실증자료 구축하고 실제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
 - 『SOFA 과제 제3296호 파트9 한미합동위원회 승인』 자료와 3군 사령부 지형정보실 협의자료에 근거하여 훈련장 지역을 실제 행정지도에 구현
 - 양주시 원주민(10년이상 거주) 집중 인터뷰를 통하여 가칭 모빌훈련(기갑훈련, 포사격 등)에 의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

- ▶ 감면 개발부담금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 정리하고 개발부담금 반환 건의(정부) 및 미래 도시개발사업 예상지역 선정 필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 기반시설(문화, 관광, 복지 인프라)을 구축하여 양주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2차 발전종합계획에서 문화, 복지, 관광 관련 복합시설 구축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요소를 적극 반영
 -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타운, 어린이 복합복지지원센터, 권역별 복지시설, 가족휴양시설 건립 등을 적극 추진
 - 군사시설 및 공여구역 등으로 낙후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의 전문 공연장이 부족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문화공연시설 추진

- ▶ 캠프 광사리의 경우 지속공여지인 관계로 활용방안의 모색보다는 규제를 완화를 통해 공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그 동안의 규제완화 노력
 - 2012.2.29. 덕계~고읍 도로공사관련하여 광사동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 면적 51,291㎡
 - 17년 상 · 하반기 경기도-3군 정책협의회 안전 상정했으나 미체택
 - 건의사항: 광사동 탄약고 경계 펜스(울타리)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물 신축 등 행위 허용(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규제해소 건의 면적

: 870,289㎡

- 협조 / 개선요구사항

- 취약지구 주민들의 역차별적 규제에 대한 완화 협조
- 현재 :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기존 주택(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점 기준)으로 제한
- 개선 :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신축의 행위 허가
- 탄약고 재배치에 따른 탄약안전거리 감소로 제한보호구역 거리의 축소 및 집단취락 지구 제한보호구역 해제

2) 반환공여지 활용: “떠난 자와 남은 자”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남면 두곡리 일원(효촌저수지 주변)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시행자 : 행안부, 국방부, 경기도, 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규모 : 약800천㎡ (저수지 400천㎡ 포함)
- 총사업비 : 미정

▶ 필요성

-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던 양주시에 소재한 모빌훈련장이 반환 이후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발생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 양주시 광적면, 남면 일대는 많은 지방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농민 등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기존 장소 등을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

▶ 제안사유 및 기대효과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미군에게 공여되어 낙후된 지역이 반환 후 특별법 제정으로 발전종합계획 등이 수립되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주시 모빌훈련장의 경우 아직까지 미개발되어 방치되고 있음
- 특히,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지역은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 보병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 심미선양이 치여 사망한 “효순-미선이 사건” 이 발생한 장소
- 예전부터 이 지역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의 훈련장소이자 주요 이동경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반면에 여러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이 어렵고 도로,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임
- 반면, 감악산, 노고산 등이 주변에 둘러쌓여 있고 효촌저수지, 신암저수지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맹골 정보화마을, 백인걸선생묘, 백수현전통가옥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임
- 또한, 확장 개통된 국지도56호선(법원-상수간) 도로 및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예정),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이 있어 수도권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접근 용이함
- 각종 개발이나 사업에서 소외되어 열악했던 환경의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주한미군에 의해 희생된 효순, 미선양을 기리며, 나아가 주한미군과 우리나라가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을 제안
- 평화공원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저수지(호수)를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시설 및 수준 높은 캠핑 (숙박)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발)구상(안)

- 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사업
 - 주한미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모빌훈련장의 일부(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1번지 일원)과 인근에 위치한 효촌저수지를 연계하여 주한미군과의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
 - 공원 내에는 “떠난 자와 남은 자” 를 상징하는 지역 특색을 담은 박물관 및 효순,

- 미선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군과 민이 화합하는 광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
- 다양한 체험시설(군사시설 체험, 서바이벌 게임 및 저수지를 이용한 레저시설 등) 및 전시시설(주한미군 관련 정보안내 및 기타 군사장비 전시 등)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찾아와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울러 캠핑장, 숙박시설 및 주말농장, 둘레길(산책로)을 조성하여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함께 공유하여 지역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
- 인근지역에는 맹골정보화마을, 백수현 전통가옥, 백인결선생묘 등이 있어 도시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전통 농촌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 또한, 주기적으로 2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오는 입대자 및 가족들에게 입대 및 휴가 등의 시기에 지역에 있는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식사, 숙박 등을 위해 멀리까지 가지 않고 힐링을 선사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패키지마을도 병행하여 조성함으로써 단순 방문객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늘려 이들이 기존 거주민과 함께 정착하여 공존하면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이에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어내고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발전에 따른 주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주변관광자원

● 효촌저수지(孝村貯水地)

- 위치 :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및 남면 두곡리·구암리 일원
- 준공 : 1982.12.30.
- 현황 : 유역면적 303ha, 저수량 184만톤
- 특성 : 양주시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노고산(401m)에서 내려오는 비암천과 효촌천을 막아 만든 저수지

● 매곡리 정보화마을

- 위치 : 양주시 남면 매곡리 305번지 일대
- 유래 : 옛날에 큰 매화나무가 있어 매골, 맹골, 매곡으로 불림
- 형성 : 2007년 5차 정보화마을 조성 대상지로 선정 자치운동을 목적으로 정보화운영위원회 구성
- 환경 : 마을 주변으로 감악산, 신암저수지, 효촌저수지가 있음, 농촌·산촌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청정지역임

- 현황 : 땡골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땡골마을 홈페이지도 개설되었음. 미술체험, 다도체험, 유가공체험, 한지·칠보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임. 백수현전 통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생태연못 및 체육공원 등 관광, 휴게시설 등이 충분함

- 백인걸선생묘

- 위치 :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산26
- 유형 : 경기도기념물 제58호
- 현황 : 조선 중기 유학자인 백인걸의 묘, 제실 등이 있음

- 백수현 전통가옥

- 위치 :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
- 유형 : 중요민속자료 제128호
- 현황 : 조선 말기(1870년대) 명성황후가 은신처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의 고택을 옮겨 지은 곳

▶ 현장 사진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그림 27]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1번지 일원(효촌저수지 인근)

- 효순, 미선양 추모비



[그림 28]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34-4번지 일원

● 주변관광자원



[그림 29] 효촌저수지



[그림 30] 맹골 정보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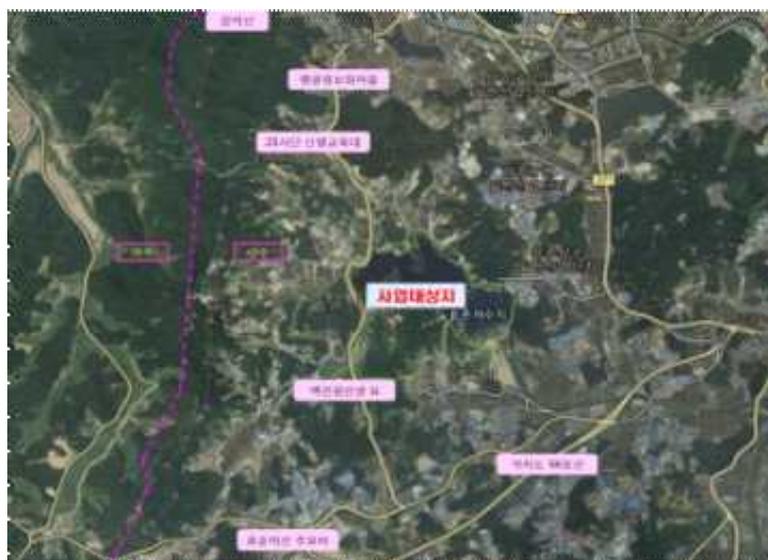


[그림 31] 백인걸선생묘



[그림 32] 백수현 전통가옥

▶ 위치도



[그림 33] 사업 위치도

4.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1) 통일 대비 공여지역 대응

- ▶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북부는 미래 통일한국시대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짐(경기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2017)
 - 경기북부는 북한과 남한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통일한국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경기북부의 자연환경은 상대적인 저개발, 군사지역 규제 등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이 높음
 - 경기북부는 DMZ, 서해 도서연안, 한강수도권 광역 생태축을 아우르는 한반도 주요 생태축의 교차점으로 생태·평화체계 구축의 핵심고리로서 의미가 큼

- ▶ 따라서 기존의 군사시설 등의 규제에 의한 개발과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적극적 개발로 통일 대비
 - 중앙정부 위주의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지역맞춤형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 경기북부와 DMZ를 통일준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접경도로서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

- ▶ 미국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은 각 시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도시공간적 입지영향력 또한 크게 때문에 개발계획 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각 시군의 지역발전 거점이 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현재 경기도의 경우도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 허브조성에 공여구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반환공여지가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산업, 문화, 자연특성에 맞는 테마형 개발을 추진

2) 미군 반환공여구역법에 의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농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미미한 실정
- 농지법, 초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부담금 감면 규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이 필요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농림부 등에 부담금 감면을 건의하여 낙후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지역혁신특구 도입

- ▶ 경기도 전체의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은 힘겨운 과제이기 때문에 특구 중심 전략으로 접근(경기도 발전전략, 2018)
-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공장, 대학,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의 신·증설 규제와 공업용지, 택지조성 사업 등을 규제
- ▶ 경제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집적되는 지역은 대도시권과 경기도
 - 시·도의 지역총생산액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한 결과, 산업과 부가가치는 대도시권에서 월등히 기여
 - 수도권, 동남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천안·아산권에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
 -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원, 고양 등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집중 분포
- ▶ 국내의 경직된 규제들이 사물인터넷이나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 외엔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대한상공회의소, 2016)를 지적

▶ 지역혁신특구 제도 도입

- 지역혁신특구 지정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
 - 문재인정부 지역혁신성장특별법(규제샌드박스법) 추진과 연계
- 지역혁신특구 지정도시 지정 추진
 - 2년마다 1개씩, 최종적으로 5개 권역 마다 1개 이상 지정
- 특구 유형으로는 ICT도시형, 문화도시형, 건강도시형 등 도시마다 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화

▶ 지역혁신특구 지원사업 추진

-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미군반환공여지,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 KTX·GTX 역세권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 유치산업 및 종사자 주택 등 각종 인센티브 마련

4)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방식 활용

▶ 경기도 활용 가능한 22개 반환공여구역 중 미반환 부지가 6곳이며 1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된 곳은 6곳임(경기도 발전전략, 2018)

-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과 의정부시 캠프 스텐리, 레드클라우드, 잭슨은 지속적으로 반환이 연기되어 개발사업 및 계획수립에 차질
- 파주시는 캠프 자이언트, 스텐톤, 에드워즈(일부에 대학유치), 게리오웬과 하남시 캠프 콜번은 2007년 이후 미개발되고 있음
- 그나마 사업이 추진되는 캠프는 비교적 입지가 좋은 의정부시 캠프 일부와 道주도 사업의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시의 님블·서캐슬,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등 일

부에 그침

▶ 민간참여 저조, 과중한 토지부담비,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 제한적인 국비지원 등으로 사업추진 담보

- 현재 사업방식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공공기관을 조성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 국가주도 개발방식의 장단점

-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국비 지원비율과 지원대상 시설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
 - 현행 공여구역 특별법에서는 토지매입비 국비지원은 도로·공원·하천에 대해 가능하나 주민들은 산업단지과 같은 경제적인 개발을 선호. 또한 국비에 대한 지자체 매칭도 버거운 지자체로서는 반환공여지 내 개발사업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개발이 된 지역이 많음
 -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비율이 상향되고 조성비 지원이 이뤄진다면 해도 동두천시 등의 경우에는 공여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국가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나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은 LH와 같은 공공공사에게 개발부지를 양여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가능해짐. 하지만 토지매입비 차입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음
 - 또한 기존 사업영역과 다르기 때문에 책임성과 적극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은 반환공여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시키고자 하는 국방부 입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
- 국유재산 위탁관리 방식은 저활용 부지를 캠프에 위탁함으로써 공사가 직접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민간 투자자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사업비 회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 소유주에게 다시 이전됨으로써 소유권이 보장이 가능
 - 하지만 반환공여지의 경우, 국방부 소유의 토지이므로 캠프에 개발을 위탁한다면 사업비 회수기간동안 국방부는 해당 토지로부터 수익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현재 국방부는 평택기지 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개발 방식은 국방부 입장에서의 반환공여지 개발에 적절하지 않음. 또한

캠코의 위탁개발사업은 사업비 회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사업임

- 현재 대부분의 반환공여지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여건의 부족 및 높은 지가로 인하여 사업성과 투자매력도가 낮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음. 캠코의 입장에서는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사업비 회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탁받기가 쉽지 않음

5) 미군반환공여지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회계 조성

▶ 반환공여지개발 전담기구 설립

- 현재의 반환공여지 사업방식은 재정·인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지자체 능력을 초과하므로 전담기구(반환공여지개발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필요
 - 현재는 지자체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형태
- 정부행정기관은 영리사업이 불가하므로,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소유·개발·관리의 업무를 부여
 - 전담기구 설립 후 선도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이후 개발 사업에 재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표 54〉 반환공여지 사업구조 제안

구분	토지 소유자	관리(인·허가)	개발	사업 후 기반시설 관리
전담 기관	국방부	반환공여지개발청	반환공여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자료 : 정윤배 외(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반환공여지 매입 및 전담기관 운영비용 확보
- 전담기구 설립시 반환공여지 및 미반환공여지 매입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

▶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전담 개발청 및 개발공사의 설치·업무에 관한

조항 추가 필요

- 새만금특별법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와 업무 내용을 포함

※ 현재 새만금개발공사(가칭) 신설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상태

<표 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 설치·업무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법 제34조)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등

자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1.18.]

6)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토지매입비 지원범위 확대

- 현재는 하천·도로·공원으로 조성하는 토지매입비의 60~80% 지원
 -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원화 사업에 의존도가 큰 반면, 주민들의 개발요구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73.3%), 문화복지(60.0%)가 높음
 - 토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가 필요

▶ 시설 조성비 지원 확대

-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상 조성비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평택법의 시설 지원은 보조금 관리법에 20%를 가산, 지방산단의 경우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 지원
- 토지매입비 매칭조차 순조롭지 못한 지자체에게 반환공여지 내 시설 설치비 마련은 불가능
 - 특별법 상의 조성비 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보조비율을 명시하고 미개발부지 활성화 위해 설치비 지원이 필요

▶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

- 공여구역 반환 이후에도 보호구역 유지로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어려움
 - 종합계획에 의해 활용계획이 있는 공여구역의 반환이 확정(공여해제) 되었을 때 보호구역 해제된 것으로 간주
- ※ 군사보호구역 : 파주시 반환공여구역, 의정부(스탠리, 잭슨)
- ※ 개발제한구역 : 의정부(스탠리, 잭슨), 하남(콜번)의 경우 입지규제로 세명대 유치 무산

▶ 공장시설 업종 제한 완화(제15조제1항)

- 현재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공장 500㎡ 이상 신설·증설 가능, 다만 신설시 영 [별표4] 명시된 109개 업종만 허용
 - 공장 신설에 대한 ① 업종제한 규정 폐지, ② 일부 제한업종 규정(네거티브), ③ 허용 업종 확대

▶ 반환공여구역 내 지상물의 민간사용 제한 폐지(제12조제7항)

-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 내 지상물 등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만 사용가능(무상양여)
 -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내 지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지자체가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양여)
- ※ 동두천 캐슬 건축물 동양대 유상매각 ⇒ 철거비 절감 및 수익발생

▶ 부담금 등의 감면을 위한 법 개정(제35조제2항)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소관법령 미 개정
- ※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 점·사용료
- 부담금 감면을 ① 임의조항 → 강제조항으로 개정, ② 감면 대상(「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확대

▶ **사업시행자 사업대상 및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및 영 제10조)**

- 종합계획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13개 사업만 시행 가능
 - 영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시행 가능하도록 명시

▶ **반환공여지 신탁·위탁 개발 허용**

- 반환공여지 민간투자자들은 신탁·위탁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용하여 토지비를 투자금 회수 후 지불하고자 하나 국방부는 토지매각방침을 고수
 - 장기 방치가 예상되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

▶ **민간의 토지비 분할납부와 토지장기 임대 허용**

- 장기분할 상환 대상자를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토지장기임대 허용
- 특별법 상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종료로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여 토지를 다각도로 운용하는 자율권 보장이 필요
 - 기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방침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초기투자비용 부담으로 사업기피 요인으로 작용
 - 공여지를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는 분납 및 임대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임차 수익내는 방식이 유리

▶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적 개발방안 수립**

- 현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 단위의 개별사업을 수록하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다가올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전 국토단위의 광역계획이 필요
-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산업구조 재편(4차 산업혁명), 유턴 기업, 수도권 광역경제권(Mega-City Region) 등을 위한 중심지로서의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발주와 국책연구기관의 개발계획 용역 수행 필요

VI.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1. 법령 개정방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 ▶ 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있음
- 여기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특법으로 약칭함)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으로 한정하여 논의함

1) 공특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 ▶ 양주시 미군공여지는 반환 및 미반환 미군공여지가 있음. 공특법상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양주시 1읍·4면·6동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공특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 참조)
 - 공특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함
 -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함
-
- ▶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함

- 공특법 시행령 별표 1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46개, 행정구역 160개를 규정하고, 별표 2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제2조 제2항 및 제17조 관련)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30개, 행정구역 178개를 규정하고 있음

〈표 56〉 양주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양주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과 2

- ▶ 양주시는 반환공여지인 모빌훈련장과 미반환공여지인 캠프 광사리가 있음. 캠프 광사리는 지속공여지 입에도 불구하고, 공특법 시행령 별표 1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캠프 광사리 주변지역 행정구역이 빠져 있음
- 공특법 시행령에는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의 정확한 행정구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는 동두천시 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없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만 명시하고 있음. 포천시와 연천군의 경우는 행정구역상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표 57〉 포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포천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화현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과 2

〈표 58〉 연천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연천군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신서면, 중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과 2

〈표 59〉 동두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동두천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과 2

〈표 60〉 의정부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의정부시 행정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과 2

- ▶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의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성은 실무적으로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 산정에서 법령상 도로·하천·공원 등의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를 최소 50%에서 60% 하한선을 추상적으로 규정
 - 별표 3에서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근거를 실무적으로는 공여구역내의 개발행위인지,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인지에 따라 차등 보조하고 있음

- ▶ 공특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공여구역의 면적 등 산정 기준(제14조제3항관련)

구분	산정기준	산정방식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면적(B)중 공여지가 차지하는 면적(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 비율이 0.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 A/B 비율이 0.01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 A/B 비율이 0.01 이상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 재정력지수가 0.8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8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기준년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면적(A)과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면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 비율이 0.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 A/B 비율이 1.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 A/B 비율이 0.5 이상 1.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 ▶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해당 지자체가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 시에 현행 법률상 국유지 매입경비의 최소 6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 공특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율은 평균 50%에 불과함
- ▶ 또한 2015. 8.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한 행정구역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현재 양주시는 공특법 시행령 별표상 양주시 전체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주2동, 백석읍, 장흥면은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 모빌훈련장은 양주시 광적면, 남면, 은현면 일원으로 면적은 상당히 넓으나 모두 한시적인 훈련장으로써 현재 취락 및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반환공여구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K-C-T-43 위스키 훈련지역 등 5개 훈련장은 주한미군의 사격장 및 훈련지역으로 사용 되어오다 1985년 2월 반환된 지역임. 2005년 9월 2일 SOFA 협정에 따라 정식 문서화하여 반환된 지역으로 양주시는 캠프모빌(동두천 소재) 보조 훈련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이처럼 모빌훈련장은 다른 지역의 미군이 주둔하는 공여지와 같이 구역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 모빌훈련장의 경우, 양주시는 과거 3개 읍면동(은현, 남면, 광적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만 알려져 있었음. 그러나 최근 양주시가 주한미군공여구역(K-C-T-43)의 정확한 행정구역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으로 회천1,2,3,4동을 추가 발굴함³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제외 및 감면) 제2항 제5호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혜택 적용받는 읍·면·동 지역)
- 과거 3개 읍면동에서만 개발부담금 혜택을 받던 것을 7개 읍면동(은현, 남면, 광적, 회천1,2,3,4동)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한 바 있음

- ▶ 그러나 캠프 광사리는 미군과 한국군 탄약고가 있는 곳으로 알려짐. 현재 미군공여구역임. 캠프 광사리는 행정구역상 양주 1동(산북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캠프 광사리 라는 양주 2동 행정구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양주 1동과 양주 2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지속 미군공여지로 알려지고 있음
- 지속미군공여지 임에도 불구하고, 공특법 시행령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양주 1동과 양주 2동이 빠져 있는 상태임. 공특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이유임

31) 양주시 전체 면적 310.32km² 중 60%에 해당하는 186.15km² 면적이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으로 확대되어 5년간 150억 부담금 감면시 약6,500억의 경제 유발 효과 창출이 있다고 양주시는 추정함.

2) 공특법상 발전종합계획의 법제도 개선방안

- ▶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공특법상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이하 발전종합계획으로 약칭함)에 반영되어야 함
 -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 양주시는 공특법에 의한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2차 발전종합계획은 2017년 수립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이면 주한미군 평택이전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함. 다만, 정부는 2023년 이후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인식임
 -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서 양주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부처 및 지자체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더 진전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 2018년 양주시 발전종합계획상 신규사업 반영 현황
 - 양주시는 신규사업으로 행안부 사업 3개, 부처사업 1개가 반영됨

〈표 61〉 행정안전부 (구 행자부) 사업

(단위: 억원)

연번	양주시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등
1	양주시	문화복지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18~'20	217	75	142	0
2	양주시	문화복지	양주시 어린이 복합복지지원센터 건립	'18~'20	64	32	32	0
3	양주시	도로	광사~만송간 도로개설	2018~2020	220	110	110	0

〈표 62〉 관련부처 사업

(단위: 억원)

연번	관련부처	시군구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등
1	문화체육관광부	양주시	양주아트센터 건립	2016~2021	705	350	355	0

▶ 2018년 양주시 발전종합계획상 계속사업 현황

- 양주시는 계속사업으로 부처사업 6개가 반영됨

〈표 63〉 관련부처 사업

(단위: 억원)

연번	시군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건수 /규모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등
1	양주시	양주시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08~'17	343,334m2	3,280.00	0.00	0.00	3,280.00
2	양주시	양주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11~'16	68,033m2	895.00	0.00	0.00	895.00
3	양주시	입암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09~'11	60,368m2	286.00	0.00	0.00	286.00
4	양주시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17	188,200m2	545.00	0.00	0.00	545.00
5	양주시	경동대학교 조성사업	'11~'23	300,000m2	760.00	0.00	0.00	760.00
6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13~'18	998,000m2	4,595.00	0.00	24.60	4,570.50

(1)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 ▶ 정부정책의 경우 공특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³²⁾

32) 하혜영·권용훈(2015),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현장조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p.62 이하 참조

-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의 입법취지를 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입법제정이 시도³³⁾되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불이익을 감수해온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변경 입법됨
- ▶ 미군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은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히 지역의 재생(再生)정책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창생(蒼生)정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의 방향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 환경,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 건설과 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2)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① 중앙정부의 역할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 및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1차 발전종합계획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환공여지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정책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평택기지건설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그간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 따라서 공특법에 국가가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33) 소성규(2005),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발표 자료, 국회사무처, 2005년 8월 26일 제255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p.4 참조.

이 고려될 수 있음

② 지방정부의 역할

- ▶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직접적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기간이 대부분 수년에 걸쳐 수행되는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교체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자체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향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발전종합계획은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됨. 그러나 현재 공여구역 관련 정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함. 경기도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임
- 향후 광역 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광역거점지역에 대한 시·도 차원의 구상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각 지자체 간의 기능 조율로 합리적인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양주시는 향후 기지 반환 시 대규모 시 개발이 전제되기 때문에, 양주시 차원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미군 반환구역의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함

(2)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

① 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 강화

- ▶ 그동안 발전종합계획의 저조한 추진율은 민자 유치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임
 - 이처럼 민자 사업의 추진율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의 반환연기 등 환경적 요인이 있음. 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초에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발전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 민자사업과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제도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심사가 있으나, 실현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향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자체가 민자 사업의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 향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지자체 사업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기초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기초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위 정부(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컨설팅 지원 등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③ 발전종합계획에서 경기도의 역할론

- ▶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는 공특법상 경기도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발전중

합계책을 수립하고 있음. 주무 중앙부처는 행자부임. 그러나 발전종합계획 사업 수행 시 국비와 해당 지자체의 예산은 50:50 매칭 구조임

- 예산수립 과정에서 경기도가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이지만, 경기도의 예산 매칭은 없는 상황임.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에게만 국비 매칭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경기도의 예산부분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임. 예를 들어, 현재 국비 50과 해당 지자체 50의 구조에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50을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분할하여 부담하는 방안이 있음 (30:20 이나 20:30 또는 25:25 등)

④ 범정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 ▶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방안으로는 첫째, “(가칭)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를 정부위원회 형식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둘째,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 협의회” 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를 분과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⑤ 공특법상 발전종합계획의 해석과 조문 간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법 개정

-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공특법 해석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 즉, 공특법 제7조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 아울러 공특법 제23조에는 고용안정사업 등, 제24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5조에는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에는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7조에는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이 라고 할 수 있는 공특법 제7조에는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총론적 발전계획을 규정하고 있지만(즉, 공특법 제7조 제2항 2호, 3호, 5호, 6호, 7호 등), 각론적 규정(공특법 제23조 내지 제27조)에는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중앙정부와의 법리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공특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거나,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³⁴⁾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공특법의 구체적 개정방안

(1) 반환공여구역의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대상과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해당 지자체가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 시에 현행 법률상 국유지 매입경비의 최소 6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

34)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어 있음. 그 밖에 제20대 국회에서는 군사시설 지원 관련하여 『군사시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입법발의 되어 있음. 이들 법안을 박정 의원, 김영우 의원 법안과 같이 통합 법안으로 해야 할지, 별개 개별 법률로 제정해야 할지 등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임

소 규정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둘째, 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 매입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재 도로, 하천, 공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에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건설하는 도로·하천·공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입경비를 일부 지원(최소 60% 이상)하고 있으나, 반환부지 활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도 매입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은 현재에도 다른 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반환공여구역내의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하여 도로 및 하천은 토지가격의 60% 이상을 보조하고, 공원의 경우는 지자체 직접 시행시는 60%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지자체 면적 대비 공여구역 비율, 1인당 공원·도로·하천 비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공특법제14조)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공특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공특법 제14조처럼 구체적인 지원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 또한 발전종합계획에 담겨지는 경우에 한정됨
 - 민간부지가 대부분이었다가 반환된 부지의 경우에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매칭 부담금 자체가 부족하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반환공여구역내의 국비보조가 가능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공특법 제24조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매입경비를 지원하는 비중도 60% 내지 70% 이상으로 명문화하며, 기존 시설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건설비용 및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환공여구역이 담보상태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고 도로 및 철도 등의 접근성이 나빠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면서도 감정평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교육 및 체험장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재활용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특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높은 수준의 매입비용 지원 및 시설의 재활용 등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증축하는 수선비용 등의 지원과 새로운 기반시설(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도 매입비용 보조와 건설비용 지원의 비중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시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경우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2)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최소 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공특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율은 평균 50%에 불과함
- 따라서 법령상으로 국가의 최소 보조율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소 60%(70%) 이상, 최대 90%까지 범위를 상향하여 정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제27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생략) ³⁵⁾ <신설>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를 우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 ▶ 주한미군의 사용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주변지역 또는 공여구역이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구역의 주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또는 개발제한 등의 규제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경제가 낙후되고 주민 복리후생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농림·해양·수산업 분야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 특례를 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여러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과반에 가까운 주변지역들이 지속적인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어³⁶⁾ 주민수요가 높고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사업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³⁷⁾
-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군부대 납품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의 1차 산업 특산물(농·축·수산물)을 군납(軍納)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 됨³⁸⁾
- 이와 유사사례로는 군사·안보상 이유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접경지역³⁹⁾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납할 수 있게 국가가 노력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⁴⁰⁾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 36)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비중 등을 고려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전체 388개 주변지역 가운데 46.7%인 158개소가 쇠퇴지역에 속하고, 경기도의 경우 165개소 중 76.3%인 126개소가 낙후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음. 경기연구원,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6. 12., 101면 이하 참조
- 37) 경기연구원, 전개 연구, 106면 이하 참조
- 38) 제20대 국회 이완영 의원 입법 발의안(2017. 9. 29.)
- 39) 휴전선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달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비무장지대는 제외,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포함)을 말함(「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 참조)
- 40) 세부적인 절차는 동법 시행령(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 고시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대강을 살펴보면, ① 접경지역의 시·군 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협의회장은 시·군 부단체장)·협의하여 해당 시·도 단체장에게 품목지정을 신청하면 ② 시·도 단체장이 부대의 조달책임 부대장과 협의하여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시·도 부단체장)에서 심의·승인하고 ③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납조항은 지정품목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지정의 효력은 3년)하도록 하고 있음

-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보다 직접적인 주민 지원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봄⁴¹⁾
- 다만, 농·축·수산물의 군납에 노력할 의무의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기반 육성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고 실제 군납 품목의 지정과 운영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깊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⁴²⁾도 의무부담주체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4) 반환공여구역에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특례 신설(제13조 제3항 신설) 및 지속공여지 양거리 조정을 통한 제한보호구역(폭발물) 해제 및 완화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신 설>	

- ▶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⁴³⁾이 해제된 것으로

41)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2018. 1, 12-13면 참조

42)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를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 로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제7호 참조)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아래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 및 제5조제1항). 통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

보도록 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함) 해제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군사기지의 철거 등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⁴⁴⁾ 및 제4조 제2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 시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은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70일에서 최대 1~2년 이상으로 군사시설의 철거로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음
- ▶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⁴⁵⁾
- 다만, 이러한 특례 신설은 ① 군사시설의 철거로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 45) 제20대 국회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안(2017. 7. 18)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⁴⁶⁾

- 또한, ②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분계선 남쪽 25k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군사시설과의 인접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반환공여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의 철거만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할 경우에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체계와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표 64〉 MDL 남쪽 25km 범위 이내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 사례

기지명	반환시기	반환면적			군사 보호구역 해제여부
		계	반 환	군 활용	
건트레이닝 에어리어	'13. 7. 29.	90,203㎡	76,267㎡	13,937㎡	유 지
캠프 캐슬	'15. 3. 31.	156,259㎡	-	156,259㎡	유 지

출처 : 행정안전부

- ▶ 마지막으로, ③ 비록 미합중국의 군사시설이 철거되었지만 반환공여구역을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시설의 철거만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에서의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① 해당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조속하고 원활한 개발 추진 필요성과, ② 군사시설의 철거로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③ 현행 군사기지법이 군사분계선 남쪽 25k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군사시설과의 인접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군사시설이 철거된 반환공여구역이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한편, 문희상위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제13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46)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문희상의원 대표발의), 2017. 11, 6면 이하 참조.

- 그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에는 안 제13조제3항의 내용은 군사기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생략)</p> <p>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④ (생략)</p>	<p>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 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양주 캠프 광사리의 경우,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속공여지임. 양주 캠프 광사리는 양주시청과 지하철 1호선이 근접한 곳임. 또한 광사동 제한보호구역(폭발물) 지정으로 인한 취락지역의 개발규제 및 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취락지구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등 해결방안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 있음
- 양주 캠프 광사리는 탄약고와 미군과 한국군 탄약 검사장 시설이 있음. 군 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군 시설물 재배치와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양주시,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5) 반환공여구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제13조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⁴⁷⁾
-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문희상위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합하여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47) 제20대 국회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안(2017. 7. 18).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특례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해제
- 해당 지역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취지로, 실제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60일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표 6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계기관 협의	협의기간은 30일 이내	30일 소요
	중양(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경계선설정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해제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약 120일 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부장관이 결정 ※단, 30만㎡이하 개발사업,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섬형태 토지에 대한 해제는 시·도지사가 결정	10일 소요

출처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자료 재인용)

- ▶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역시 ① 군사시설의 철거로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⁴⁸⁾

-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군사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② 비록 군사시설은 철거되었다고는 하나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유지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군사시설의 철거만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반환공여구역에서의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① 해당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조속하고 원활한 개발 추진 필요성과, ② 군사시설의 철거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지역 중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③ 군사시설이 철거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유지될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48)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문희상의원 대표발의), 2017. 11, 12면 이하 참조.

(6)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추가(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신설)

현 행	개정안
<p>제10조(사업시행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5. (생략)⁴⁹⁾</p> <p><신설></p> <p><신설></p> <p>②·③ (생략)</p> <p>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0조(사업시행자) ①</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대상지역의 사업에 한정한다)</p> <p>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 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p> <p>-----제4항</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49)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 ▶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인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0) ④ 지방공사, 그리고 ⑤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 시행승인⁵¹⁾을 얻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여기에 “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대상지역 내 사업’ 에 한정하여 ⑥ 공공 부문(①~④)과 민간 부문(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이전에 사업시행 목적으로 출자·설립한 법인(공공 부문 출자 비율 1/3 이상일 것)” 을 추가함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⁵²⁾에 있어 추진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됨⁵³⁾
-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입안(立案)하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 및 제8조), 국토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수립지침」은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할 경우 해제대상지역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는 활용방안 수립 시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주체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⁵⁴⁾” 을 규정하면서, 요건으로 공공 부문 출자 50% 이상을 요구하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6월부터 1/3 이상으로 완화하였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51) 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0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52) 참고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현황은 참고자료(“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제한 현황”) 참조

53) 제20대 국회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안(2017. 7. 18)

54)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은 특수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의 일종으로 상법상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중개회사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PF(Project Financing, 돈을 빌리는 사람·법인의 신용이나 담보가치 대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와 결합하여 부동산 개발, 영화 제작 사업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동아일보 “[아하! 경제뉴스]SPC(특수목적법인)는 무엇이며 저축은행 부실과 무슨 관련이나” 참조)

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이후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다시 기존처럼 공공 부문이 50% 이상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⁵⁵⁾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해제지역보다 공공 부문 출자 비중 요건이 완화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할 경우, 민간 자본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된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법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체계 통일성⁵⁶⁾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⁵⁷⁾

5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이 경우 환지는 해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정한다)으로 추진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 다만, 2017년 12월 31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를 2/3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사. 기업형임대사업자(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아. 가 ~ 바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6)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필요 시 국토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수립지침」을 개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임

57)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2018. 1, 18면

〈표 66〉 공특법 개정 관련 주요 입법발의 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개정안 주요내용
문화상 의원 (2017.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추가
이완영 의원 (2017.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7조제2항 신설).
곽상도 의원 (2017.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의 소요경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의 조성에도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김성원 의원 (2016.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홍문종 의원 (2016.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의2제1항 신설).
김희국 의원 (2015.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하고,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의3 신설)
문화상 의원 (2012.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14조 제1항 제3호 신설 및 제34조의2 제1항 신설)

(7)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의 신설(제19조의2 신설)

-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및 이전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에 있어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표 1〉 공특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p> <p>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회를 둔다.</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4항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 제도 개선방안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됨
(법 제29조, 31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의 전용신고
-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
-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용 상수도 인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의 점용 허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의 승인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협의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 그런데 이와 같은 의제처리 규정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해야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올 수 있어, 공무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을 요구함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로 완결시킴으로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조례 제·개정 방안

1) 경기도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1) 경기도 주한미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주한미군 관련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12.16.)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2016.08.03.) 등이 제정되어 있음.
-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평택시는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2017.09.29.),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2016.11.14.),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06.03),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법명개정>(2016.06.03.),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2015.06.09.),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2013.07.30.),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2013.06.10.),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2012.11.14.)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2012.03.14.) 등 제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주한미군이 일부 떠나거나 남아있는 경기북부지역에는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2017.07.03.),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2016.06.29.) 등으로 조례 제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경기도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배경

- ▶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 주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의 제한, 건축제한, 용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토지이용의 용도제한과 저이용상태의 지속으로 군부대와 지자체 및 주민간의 충돌이 잦아지고, 소송으로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측면에서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타 지역과의 경제수준 균형을 유지시켜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군 기지를 둘러싼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3) 경기도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내용

▶ 조례를 통한 지원사항

- 대형차량의 통행, 연습장의 황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시·읍·면이 행하는 하천보수, 방사시설, 도로 등의 공사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군부대의 이동이나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당해 구역이 지정된 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이 행하는 방음공사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
- 주택방음공사는 항공기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에 기초해서 옥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옥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 및 운영비의 지원함
- 방음공사로 설치된 공조기기(에어컨 및 환풍기 등) 또는 방음기기 중에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화로 인해 고장 등이 발생하는 공조기기 등을 대상으로 기능복구 공사를 지원함
-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주변의 생활불편이나 소음 등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역 외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전보상이나 토지매입을 추진함
 - 보상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용함
-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동일한 지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때에 이전희망지에 대해서 도로, 수도 및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에 필요한 시·읍·면에 대해서 지원함
- 군부대 주변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국가가 매입한 토지(주변재산) 등에 대해서 녹지 및 공원 등 그 밖의 완충지대를 정비함
 - 녹지대 정비사업은 수목의 식재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황에 비추어서 잔디밭 또는 꽃밭의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부대시설로 휴게소 등의 설치도 고려함

- 미군 공여지 주변의 항공기 등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국가가 매입한 토지(주변재산)에 대해서 시·읍·면 등이 광장,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함
 - 매입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광장(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주차장, 화단, 종묘육성시설(시민농원 등), 소방 관련 시설, 공공용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재 또는 기자재를 보관하는 시설, 그밖에 공원, 녹지 등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그리고 민생안정시설의 정비를 지원하여, 비행장, 훈련장 등이 존재함으로써 주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읍면 등이 행하는 공원, 도로, 체육관, 커뮤니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이나 농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등의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지원함
- 그 밖에 학습 등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노후화되거나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재건축이나 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보수공사를 지원함
-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중앙교부금 및 특정지역주변정비조정교부금(신설)의 교부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1) 현황

- ▶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됨
- 경기북부 반환기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특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경기도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특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이 있음

(2) 문제점

- ▶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계획의 수립권자와 조세 감면권자가 동일함에도 조례의 미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⁵⁸⁾
-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대부분이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영한 “민간투자지자체사업”은 추진이 미미한 사항임

(3) 개선방안

- ▶ 동법에 의거 “경기도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간투자 지자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특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 적극시행
-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 2.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조성비 등이 감면되도록 경기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추진”

〈표 6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현 행	개정안
제9조의1 신설	제9조의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50로 하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58) 2015년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의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 시는 건의안에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로 감경하고,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시의 건의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가 50억~60억원에서 25억~30억원으로 줄어듦.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남방동 등 양주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64만6천989㎡에 주거단지와 행정타운, 상업시설, 시민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천851억원임. 양주시는 앞서 2013년 1월 (주)학운산업개발, (주)서희건설, KTB투자증권(주)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 양주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양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미군 공여구역을 개발하는 지자체가 혜택을 받게 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4) 법령개정(안)

- ▶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산지법」에 의한 “대체산림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조항을 “할 수 있다” 에서 “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으로
 -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5) 기대효과

- ▶ 도세 조례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 창출
 -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 공특법 제정 취지인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유도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행으로 민간사업자 투자활성화
 - 경기북부 반환기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3.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1)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양주시 차원의 적용방안

- ▶ 현행법상 참여적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이 유일하며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16조~제2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며, 필요시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할 것임⁵⁹⁾
- 주민참여 주요방안으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로 지역 내 각계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학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들 수 있음.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고 오랜 기간 축적된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전문성이 가미된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노력에 기반 한 위원회임.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의회는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며 필요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함
 - 양주시 차원에서는 광적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발전협의회를 확장하는 방안, 양주시 전체 캠프지역 마을(동)로 구성한 (가칭) ‘양주시 미군공여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방안을 제안함
- 다음으로 지역공론화위원회 방식임. 해당 방법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구성해 나가는 방식임. 일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해당 위원회에서는 공론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20여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공론화위원회를 사전에 설치하고 여기서 공론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지역주민)을 공모 후 200여명 정도를 랜덤방식으로 추출하여 여기서 나온 결정방식을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관청에 권고, 혹은 제안함
 - 양주시 차원에서는 캠프 광사리 등 아직 미반환지역에서의 사업결정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 혹은 각 캠프당 (가칭) ‘공론조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이 있음. 이 관련하여 향후 양주시에 적합한 형태의 방안이 요구하며 그 구성과 내용은 그 갈등 상황과 참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음. 우선 주민협의체가 있

59) 상세한 내용은 신동훈·조성배·소성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9, 81면 이하 참조.

음. 이 방식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갈등 등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임. 협의체 구성은 각종 사업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므로 협의회에서 향후 미래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둔 발전위원회로의 전환도 가능함. 다음으로 시민협의체가 있음. 이는 다수의 지역이 관련되고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 구조임. 협의체 구성은 다양한 각 마을, 동마다의 의견이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하며 협의회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로의 전환도 가능함

- 양주시 차원에서는 다수의 읍면동이 관련되어 있고 각 캠프지역 마다 (가칭) ‘캠프 모빌 시민협의회’, (가칭) ‘캠프 광사리 시민협의회’ 로 설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그리고 상인협의체임. 해당 지역이 상업이 중심일 경우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논의 구조임. 즉 각 시장상인회, 번영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 미군 공여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완료 후 갈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역상가발전위원회로의 전환도 가능함

- ▶ 마지막으로 조정협의체임. 이 방식은 갈등이 발생, 혹은 심화되어 주민 간, 혹은 주민과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적용되는 논의 구조임
- 해당 마을의 주민대표,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련한 다양한 이슈의 해소는 물론 해결을 위한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발전위원회로의 전환도 가능함

2) 양주시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방안

- ▶ 미군공여지 문제 이외에도 각종 양주시 관련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 조례의 내용은 큰 틀에서 기존의 기초지자체의 조례와 유사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각종 주민참여 방법이 바람직할 것임
- 미군공여지에 대한 갈등관리 방식과 관련하여 반환지역, 미반환지역으로 구분함. 반환지역의 경우, 주변 이용형태(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와 해당 반환지역의 이용방식에 따라, 관리방안의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임. 미반환지역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갈등관리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이와 함께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해당 거주민 혹은 상업인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우선 캠프 모빌의 경우, 광적면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가칭) 캠프 모빌 시민협의회’ 를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캠프 광사리의 경우 ‘(가칭) 캠프 광사리 시민협의회’ 를 구성 및 운영하며, 해당 협의체는 심도 있는 지역상생협력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밖에 양주시 미군공여지 전체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방식도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2008),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 경기연구원.
- 김홍배 외(2007),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홍주 외(2009), “도심지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사례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4호.
- 박정 외(2016),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소성규 외(2015), 반환받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활성화방안, 경기도의회.
- 소성규 외(2017),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경기도의회.
- 오은주 외(201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왕건 외(2011),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재생사례”, 국토연구원.
- 장윤배 외(미발간),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 장윤배 외(2018),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 장인봉 외(2013),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2호: 219-238.
- 전대욱 외(2010),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성장동력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용환 외(2016),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 동두천시 반환(예정)기지 개발전략 연구용역.
- 한인영 외(2014),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전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99호): 473-496
- 행정자치부(2016),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
- BICC(1995), “Restructuring the US Military Bases in German Scope, Impacts, and Opportunities”,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Report.
- Rickenbacker(2014), .Rickenbacker Inland Port., Columbus, Ohio, USA
- 리켄배커 국제 물류센터(www.rickenbackerinlandport.com)
- 오кина와 현청, Okinawa prefecture homepage(www.pref.okinawa.jp)

[별첨 1]

지형도면 고시

육군 제2167부대 고시 제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0

육군 제2167부대장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
제한보호구역 (폭발물관련 : 1km)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642,777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마전동, 산북동	3,665,979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방도리)	2,153,97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석금리, 정수리, 추계리)	4,325,56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2,483,72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장현리)	2,320,521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선팔리)	480,431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131,4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무봉리, 송우리, 이곡리, 이동교리)	3,834,725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2,015,53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화현리)	1,849,430	

2. 지형도면등(Click시 지형도면 확인 가능토록 아이콘화 표시가능)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i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첨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3.4>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신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하는 경우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